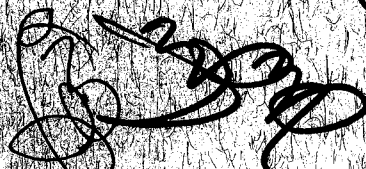




태조사지침

1974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광공업동태조사지침

1974

## 목 차

1. 조사 개요 .....	1
가. 조사목적 .....	1
나. 조사사항 .....	1
다. 조사대상 및 단위 .....	5
라. 조사시기 .....	7
마. 조사방법 .....	7
바. 집계 및 공표 .....	7
2. 실사 및 면접 .....	11
가. 일반적인 유의사항 .....	11
나. 실 사 .....	12
다. 유고사업체 처리 .....	13
라. 신규대상업체의 색출 .....	15
마. 면 접 .....	16
3. 조사표류 기입요령 .....	21
가. 일반적인 유의사항 .....	21
나. 물량조사표 기입요령 .....	22
다. 금액조사표 기입요령 .....	33
라. 광공업 생산자 판매가격조사표 기입요령 .....	36
마. 전기업 동태조사표 기입요령 .....	37

4. 검토 및 제출.....	41
가. 검토.....	41
나. 제출.....	42

< 부    록 >

1. 문제권 및 용의사항.....	45
2. 광공업 동태조사 지정품목 분류표.....	81
3. 금액조사를 실시하는 산업.....	105
4. 도량형단위 환산표.....	109
5. 조사표류 및 서식.....	117

# 1. 조사 개요

# 1. 조 사 개 요

## 가. 조사목적

본 조사는 1954년에 시작된 조사로서

- 1) 산업생산지수를 비롯한 각종 광공업에 관한 지수를 편제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 2) 광공업 사업체의 고용 및 급여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며
- 3) 주요 품목에 대한 월별 물량 통계를 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 나. 조사사항

### 1) 조사의 종류

당원의 광공업동태조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사로 구분된다.

#### 가) 광공업동태조사

이 조사는 지정된 광공업 사업체의 제품과 원재료중 매월 지정된 품목(부록 2-가, 2-나참조)에 대한 생산량 출하량 재고량 등의 물량을 조사 파악하는 물량조사와 생산액 출하액 재고액 등의 금액으로 접근하는 금액조사로 나뉘어진다.

금액조사를 실시하는 부문은 다음과 같으며 그 이외의 부문은 물량 조사한다.

- (1) 산업세세분류 29010 \* 토사석채굴업 \*
- (2) 산업세세분류 32120 \* 직물제품제조업 \*
- (3) 산업세세분류 32200 \* 의복제조업 \*
- (4) 산업세세분류 35220 \* 의약품 제조업 \*

조사표 사용은 물량조사시에는 조사표 (I-A) 를 사용하며  
금액조사시는 조사표 (II-A) 를, 의약품 생산 사업체 조사시는  
조사표 (II-B) 를 사용하여야 한다. 금액조사 대상사업체라  
하더라도 물량조사의 지정품목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물량조사  
표 (I-A) 도 함께 작성하되, '고용 및 급여' 는 중복기입하  
여서는 안된다.

나) 전기업동태조사

전기업부문의 발전동태를 파악하고자 매월 전기업사업체  
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조사표 (I-B) 를 사용하  
다.

다) 광공업 생산자 판매가격조사

금액조사에 대한 '메플레이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지정품목의 품질규격 (부록 2-나 참조) 에 대한 생산자 판매  
가격을 조사하며 조사표 (III) 를 사용한다.

2) 조사표 내용

가) 계 품

월초재고량, 생산량, 자가소비량, 출하량, (시판, 수출로 구분)  
과부족보정량, 월말재고량.

나) 원재료

원재료명, 월초재고량 (국산품, 수입품 구분), 구입량 (국산품,  
수입품 구분), 자가생산량, 사용량, 과부족보정량, 월말재고량  
(국산품, 수입품 구분)

다) 고용 및 급여

퇴고용자 (생산종업원, 사무 및 기타종업원), 자영업주 및  
가족종사자, 월말종업원수, 월중연근무인원수, 급여액

라) 조업일수

## 다. 조사대상 및 단위 3

### 1) 조사대상

이 조사의 산업상의 조사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광업·제조업 및 전기업이며 조사대상사업체는 종업원 5인 이상의 전기(前記) 산업에 속하는 사업체중 당원이 지정한 사업체만을 조사한다.

각 조사원이 담당할 조사대상 사업체는 각 조사구별 명부에 명시되어 있으며 조사의 종류도 명시되어 있음.

- 물 · (物) ..... 물량조사
- 금 · (金) ..... 금액조사
- 가 · (價) ..... 생산자 판매가격조사

### 가) 광업 및 채석업의 정의(定義)

광업 및 채석업은 유기물 또는 무기물에 관계없이 넓은 의미에서 자연 그대로의 기체(석탄가스), 액체(원유), 고체(석탄 및 금속)의 광물을 채광, 채취 및 채석작업을 하는 사업을 말하며, 또한 광석중의 혼잡물을 제거하기 위한 모든 추가활동 즉 채광(採鑛), 세척(洗滌), 체질, 선광(選鑛), 용해 및 건조 등을 광산 경영업자가 하든 타 사업자가 하든간에 포함된다.

※ 광업 및 채석활동과 연관하지 않고 경영되는 흙, 돌 및 광물의 파쇄, 분쇄 또는 다른 상태로 변형시키는 것은 369(기타 광물제품제조업)에 포함된다.

### 나) 제조업의 정의

제조업이란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기계적 또는 화학적 작용을 가함으로써 그것을 새로운 생산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그 작업은 동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든 사람의 힘에 의하여 이루어지든 또는 공장에서 행하여지든 집안에서 행하여지든 이를 가리지 않는다.

## 2) 조사단위 (調查單位)

조사단위는 사업체이다. 사업체라 함은 개개의 공장, 작업장, 광산, 사업소 등과 같이 일정구역을 점거하고 그 곳에서 제품, 광산물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독립된 「물리적 장소」를 말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취급한다.

가) 동일구내에 있더라도 별개의 사업체로 보는 경우

(1) 단일경영체에 속하는 몇 개의 사업장이 동일한 구내에 있더라도 출근부와 임금대장 및 재산목록 등 경영장부를 각 공장별로 구분하여 가지고 있으면 각각 별개의 사업체로 본다.

(2) 경영장부를 별개로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원재료 구입량, 제품생산량 및 출하량 등을 공장별로 구분하여 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영장부 또는 기록이 공장별로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개의 사업체로 취급한다.

나)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사업체로 보는 경우

서로 떨어져서 다른 구내에 분리되어 있더라도 경영장부 또는 기록이 한군데로 통합되어 있을 때에는 그 장부를 주관하고 있는 사업체에 포함시켜서 하나의 사업체로 간주하여 조사한다.

라. 조사시기 |

조사의 기준일자는 매월말이며 조사 기준기간은 그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1개월로 한다.

마. 조사방법

면접식 타계주의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원의 배치가 어려운 지역에 위치한 사업체는 우편조사한다.

바. 집계 및 공표

계출된 조사표는 검사, 부호기입, 기계집계, 분석 등을 거쳐 「산업생산·출하·재고동향」 속보로 발간, 매월 말일까지 공표하며 구체적인 자료는 「한국통계월보」 및 「산업생산연보」에 게재 공표한다.

## 2. 실사 및 면접

## 2. 실 사 및 면 접

### 가. 일반적인 유의사항

광공업동태조사가 잘 되고 안됨은 조사의 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각 조사원의 노력과 조사에 대한 이해여하에 달려 있다.

이 광공업동태조사는 여타의 조사와는 달리 조사 대상사업체가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어 일개 조사구가 포괄하는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각 조사원의 보다 열의 있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며 또한 광공업부문의 성장이 급격하고 그 조사결과가 극히 예민하게 작용하는 것이므로 본 조사의 중요성과 사용되는 제 개념을 명백히 인식하고 모든 노력과 성의를 다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 1) 조사원은 당해 조사구내에 새로 설립된 신규사업체를 색출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 2) 광공업동태조사 사업체명부에 이미 부여된 조사구 및 사업체 번호, 산업분류, 지정생산물명등은 조사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도원을 경유하여 중앙에 보고한 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 또한 사업체에서 새로이 지정품목을 생산하였을 때에는 조사표 제품란에 기재하고 척요란에 그 사유를 자세히 기입하여야 하며 생산량 유무를 막론하고 매월 품목번호, 품목명, 단위등을 기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3) 조사원은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타에 누설시켜서는 안되며 통계법에 따라 그 비밀이 절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조사원 기록부는 사용이 다된 것은 반드시 지도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분실시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도원은 반납된 조사기록부 전량을 중앙에 송부하여야 한다.

- 4) 유고사업체일지라도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하여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나. 실 사

- 1) 광공업동태조사를 담당하는 조사원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담당조사구내의 지정사업체를 순방하여 각종 조사표의 기입을 완료하도록 할 것이며 응답자의 부재등 제 사유로 인하여 조사표를 작성치 못하였거나 조사표 기입상에 잘못이 발견된 사업체는 10일~12일까지 사이에 재방문하여 조사표의 작성을 완료토록 한다.
- 2) 조사원은 별도 배부된 「조사기록부」에 다음 조사를 위하여 참고가 될 사항을 기록하여 두어야 하며 이 조사기록부와 기타 사항을 참고로 하여 조사의 누락이나 월초제고량 일치여부 오기 또는 잘못된 조사가 없이 조사표가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확인하여야 한다.
- 3) 사업체에서 결산 지연등의 사유에 의하여 기간내 조사표를 작성 제출치 못할 경우에는 전월 생산량 자료를 참고로 사업체 담당자와 협의하여 잠정조사표를 제출한 후 그 다음 확정조사표를 반드시 제출한다.
- 4) 실사완료된 조사표는 재조사 지시나 질의 조회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5) 실사 순방시 관할구역내 신규사업체 및 사업체이동등 변동사

- 항을 아울러 파악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다. 유고사업체 처리

유고사업체라 함은 응답불응, 휴업, 폐업, 소재불명, 이전, 전업 및 명칭변경의 사업체를 말하며 각자가 담당하는 사업체 중에서 위와 같은 유고사업체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다음과 같은 요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1) 응답을 거절하는 사업체

응답을 거절하는 사업체에 대하여는 즉시 그 사업체명, 거절 이유 및 기타 참고 사항을 별도 배포된 유고사업체 보고서식 (1-1)에 기재하여 그 관할 지도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른 지시가 있을 때까지 계속하여 사업주에게 협조를 종용하여야 한다.

### 2) 휴업사업체

조사대상 사업체가 휴업인 경우에도 매월 그 사업체를 방문하여 재가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조사표에는 미 해결된 잔류종업원수, 재고품의 출하등에 관하여 기입하고 적요란에 「휴업중」이라 명기하여 조사표를 제출하고 유고사업체 보고서식 (1-1)에 기재하여 관할 지도원에게 보고해야 하며 재가동하였을 때는 정상적인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3) 폐업사업체

조사대상 사업체가 폐업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업체명칭, 폐업 일자, 폐업이유와 기타 참고자료를 「유고사업체 보고서식」 (1-1)에 기재하여 지도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폐업 한 월의 조사는 적요란에 「폐업」이라 명기하여 제출하며 조사중지 지시가

있을 때까지 계속 조사표를 작성 제출한다.

또한 매월 그 사업체가 위치했던 곳을 순회하여 새로운 사업체의 신설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새로운 사업체가 신설되었을 경우에는 신규사업체 색출요령에 의거 색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4) 이전사업체

가) 조사대상 사업체가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이웃이나 동사무소에 문의하는 등 최선의 방법에 의하여 그 이전지를 찾아내도록 하여야 하며 새로 이전된 곳이 담당조사구 내인 경우에는 계속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적요란에 이전이라고 명기하고 이전된 곳의 소재지, 전화번호 등 제변경사항을 기입하여 관할지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자기가 담당하는 조사구외로 사업체가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그 월에 한하여 조사표 적요란에 "이전"이라 기입하여 제출하되 별도로 사업체명, 이전전 소재지, 이전후 소재지, 신규 전화번호 및 기타 참고사항을 "유고사업체 보고서식" (1-2)에 기입하여 지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대상사업체가 회계처리상의 이유로 인하여 타조사구에 소재하고 있는 본사 또는 사업장에서 조사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본사 또는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등을 "유고사업체 보고서식" (1-2)에 기입하여 관할 지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매월 이전된 전사업체의 소재지를 순회하여 새로운 사업체의 신설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새로운 사업체가 신설되었을 경우에는 신규사업체 색출보고요령에 의거하여 색출보고서를 관할지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이전사업체 편입에 대한 추가실사 지시가 있으면 즉시 그 사업체를 명부에 추가하고 매월 조사를 실시하며 대상사업체 카드를 2매씩 작성하여 지도원에게 제출한다.

5) 소재불명사업체

조사대상사업체의 소재지가 불명한 경우에는 동사무소나 이웃에 문의하는 등 취선의 방법으로 소재지를 찾도록 노력하고 그래도 소재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유고사업체 보고서식 (1-1)에 기입하여 관할 지도원에게 보고하고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계속 조사표를 작성 제출한다.

6) 전업사업체

조사대상사업체가 전업하여 지정된 조사대상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지정된 조사대상 산업이 아닌 경우에는 조사표의 적요란에 "전업"이라 명기하여 제출하고 별도로 "유고 사업체 보고서식" (1-2)에 그 내용을 상세히 기입하여 관할 지도원에게 보고하고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조사표를 작성 제출한다.

7) 명칭변경사업체

조사대상사업체가 명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조사표의 적요란에 "명칭변경"이라 기입하여 제출하고 별도로 변경전 명칭, 변경후 명칭 및 변경일자 등을 "유고사업체 보고서식" (1-2)에 기입하여 관할 지도원에게 제출한다. 또한 담당조사원 사업체명부도 변경된 내용을 수정보완한다.

라. 신규대상사업체의 색출

광공업동태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령에 의하여 신규사업체를 색출보고하여 조사대상사업체 명부를 보완한다.



1) 선택대상사업체

- 가) 광공업통계조사(연간조사)에서 조사 누락되었거나 그후 신설된 사업체로서 조사대상 지정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사업체
- 나) 광공업 통계조사(연간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사업체중 전업하여 조사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체

2) 선택보고요령

현지 조사에서 선택하거나 또는 시, 군행정기관에 비치된 제 자료에 의하여 선택하여 소정의 「광공업동태조사 신규사업체 선택보고 서식」에 의하여 관할 지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예비실사

신규로 선택된 사업체에 대하여 예비실사 지시를 받은 조사원은 해당 사업체의 예비실사를 완료하고 소정의 「광공업동태조사 신규사업체 예비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표 제출시 지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추가대상사업체

조사원은 추가대상사업체에 대한 실사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사업체를 사업체 명부에 추가하고 매월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대상 사업체 카드 2매를 작성하여 관할 지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면 접

- 1) 조사원은 대상사업체를 방문하여 사업주 또는 실무자와의 면 접을 요청할 때에는 단정한 용모와 품행을 유지하고 응답자에게 좋은 인상을 주도록 해야 하며 정중한 태도로 자기 소개를 먼저 한 다음에 조사원증을 제시한다.

- 2) 인사가 끝나면 조사표를 제시하고 조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동시에 본 조사는 지정통계로서 통계법에 의하여 대상 사업체는 신고의무가 있으며 비밀이 엄수된다는 것을 잘 설명해야 한다.
- 3) 대규모사업체(장부비치사업체)와 같이 즉석에서 조사하기 곤란할 때에는 본 조사표를 교부한 후 각 항목별로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 4) 직접 문답식으로 조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각 항목별로 연관이 되지 않고 불성실한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응답자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언쟁을 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지 말고 침착한 태도로 상대방의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한다.
- 5) 조사원은 항상 응답자와의 원활하고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여 응답자의 신뢰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 6) 응답을 거절할 경우 재삼 취지를 설명하고 도저히 불가능할 시에는 그 사업체의 대표자를 만나는 것이 좋다.  
그도 불가능할 시는 담당지도원에게 경위와 사유를 보고하여 지시에 따른다.

### 3. 조사표류 기입요령

### 3. 조사표류 기입요령

#### 가. 일반적인 유의사항

조사원은 조사표의 기입에 앞서 조사항목의 정의 및 기입 요령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따라 완전하고도 정확한 조사표를 작성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1) 조사표는 반드시 청색 또는 흑색 잉크나 볼펜을 사용하여 각 칸에 맞도록 깨끗이 작성한다.
- 2) 숫자는 반드시 1, 2, 3 .....과 같은 아라비아 숫자를 기입하며 기입한 숫자는 혼동되지 않도록 또박또박 기입한다.
- 3) 숫자 이외는 가급적 한자의 정자를 사용한다.
- 4) 규격란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은 구분하여 기입하고 각 품위, 함량, 용량 등의 품질규격을 기입토록 한다.
- 5) 각 수량에 있어 단위 미만과 금액에 있어 천원 미만은 4사 5입 하여야 한다.
- 6) 품목명 및 품목번호는 「지정품목 분류표」에 의거하여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 7) 단위는 「지정품목 분류표」에 지정된 단위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단위와 상이할 때는 지정단위로 환산하여야 한다.
- 8) 오기사항을 정정코자 할 때는 횡선을 긋고 그 바로 위에 올바른 것을 기입하되 적색 또는 주색 잉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즉 오기된 것을 지우고 새로운 것을 기입하여서는 안 되며 반드시 오기된 것에는 횡선을 그어 다음에 알아 보도록 하고 그 위에 새로운 것을 기입한다.

9) 조사표는 조사원이 직접 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측석  
에 석회 기입이 곤란하거나 응답자가 원하는 경우엔 응답자에게  
기입을 의뢰하여도 좋다.

단, 응답자에게 기입을 의뢰할 때는 조사항목에 대한 정의를  
충분히 이해시키고 기입이 완료된 조사표는 재검토하여야 한다.

10) ※표가 있는 란은 기입하지 않는다.

11) 생산량과 고용 및 급여에 현저한 증감이 있을 때에는 적요  
란에 그 요인을 자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12) 물량 및 금액란은 단위를 정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조사표에

백 만	십 만	만	천	백	십	일

과 같이 자리를 미리 정해 놓았으니 이에 맞추어 기입하여야  
한다.

13) 조사구번호 및 사업체번호는 사업체명부의 일련번호와 일치하  
도록 기입한다.

나. 물량조사표 (1-A) 기입요령 20

1) 일반적 사항

가) 사업체명 및 소재지

(1) 사업체명이라 함은 사업체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  
을 말하며 이는 사업체의 구체적인 명칭을 기입한다.

예 : 「신진자동차공업주식회사 부산공장」

「주식회사 동국제강 대구공장」



별도지시가 없는 한 고정시켜 기입한다.

라) 산업분류

사업체별로 지정된 산업분류 번호를 기입하되 반드시 5째자리까지 기입한다.

(예) 23010

23023

2) 계 품

가) 제품은 그 사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원재료 또는 구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직접 생산하거나 타 사업체에 원재료를 제공하여 위탁 생산한 모든 제품을 말한다. 그러나 위탁자가 본 조사대상이 아닌 경우(예: 개인, 상자 등)에는 수탁 제조업체에서 조사한다.

나) 조사표에 기입할 품목은 그 사업체의 품목 중에서 「지정 품목 분류표」에 기재되어 있는 품목에 한한다.

그리고 사업체에서 원재료를 사용하여 일단계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사용된 중간 제품이 「지정 품목 분류표」에 있을 경우에만 제품으로 간주하고 조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조사표에 품목을 기입하기 전에 이 「품목 분류표」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사업체의 제품중에서 어느 것이 조사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사업체의 제품이 「품목 분류표」의 어느 품목에 해당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제품의 구체적인 성질 및 용도를 알아내어 해당 품목명을 기입할 것이며 그래도 알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그대로 기입한다.

(가) 품목번호 및 품목명

(1) 품목번호 「지정 품목 분류표」 좌측에 있는 숫자를 기입한다.

만약 한 단위만 틀려도 기계 집계를 하기 때문에 결과치가 판이하게 나타나니 유의하여야 한다.

(예) 2302301 금광석  
2302302 은광석

(2) 품목명 \* 지정품목 분류표 \* 에 의하여 기입하며 단일 제 품이 동 분류표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그 사업체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명칭을 기입하되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세분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예) X 합성수지 (合成樹脂) → O 요소수지 (尿素樹脂)

X 양은식기 (洋銀食器) → O 알미늄프레스가공식기및용기

X 가구류 (家具類) → O 장농

또한 사업체명부상에는 각 사업체별로 생산품명이 명시되어 있으니 조사표 작성시 생산량 유무를 불문하고 반드시 매 월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체에서 새로이 지정품목을 생산 할 경우나 생산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도 그 사유를 자세히 보고하여 지시에 따른다.

(나) 규격 및 단위

각 품목의 규격은 지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품목의 규격을 그대로 적으면 된다. 그러나 동일명칭의 품목이 라도 규격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은 규격별로 구분하여 기입하고 여러가지 규격품을 단일 규격으로 환 산 가능할때는 단일규격으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특히 광업에서는 각 광석의 품위를 화학제조업 및 기계기구 제조업에는 규격 및 용량을 반드시 규격란에 명기하여야 한다.

각 품목의 단위는 \* 지정품목 분류표 \* 에 지정된 단위를



사용하며 그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단위와 상이할 때는 지정된 단위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만약 제품명을 「지정품목 분류표」에서 찾지 못하여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수량 단위는 「미터법」에 의하여야 한다. 또한 일부병행단위 조사품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두가지를 조사 보고하여야 한다.

(가) 월초 재고량 (전월말재고)

그달의 초일에 사업체에서 보유하였던 제품의 재고량, 즉 전월에서 이월된 재고량을 말한다. 따라서 전월에 조사 보고된 조사표상의 월말 재고량과 금월의 월초 재고량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그 사업체에서 수탁가공한 제품과 이미 판매 되었으나 미출고된 제품의 재고량은 그 사업체의 재고로 보아서는 안된다.

(나) 월중 생산량

그 월의 초일에서 말일까지의 1개월간 그 사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것과 타 사업체에 원재료를 제공하여 위탁 생산한 제품을 포함한다.

생산량은 전월 생산량과 금월 생산량으로 구분하여 주어진 단위간에 토박토박 기입한다.

생산이란 조사 기간 내에 최종적인 사내 검사를 완료하고 그 사업체에서 제품으로 정리된 것을 말하며 사업체에서 일단계의 생산을 하고 다시 다른 제품으로 제조되는 중간 제품도 「지정품목 분류표」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는 생산품목으로 간주한다.

(예) 어떤 방직공장에서 면사 1,000 kg를 생산하고 그중 500 kg을 판매하고 나머지 500 kg을 가지고 다시 600㎡의 광목을 생산하였다면 이 사업체의 생산량은 면사 1,000kg, 광목 600㎡으로 기입되어야 한다.

생산량은 전월 생산량과 금월 생산량으로 구분 기입한다. 전월 생산량은 기보고된 수치와 일치하여야 하며 금월 생산량과 비교하여 증감이 있을 경우 증감요인을 밝혀 적요란에 기록한다.

(라) 자가소비량

그 월중에 그 사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다른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다시 소비한 양을 말한다. 위의 예에서 광목 생산을 위하여 소비한 500 kg의 면사가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위탁생산을 위하여 타 사업체에 반출된 중간 제품도 여기에 포함된다.

(박) 출하량 (판매량 등)

그 사업체에서 실제 생산한 제품 및 타 사업체에 위탁하여 생산한 제품 중에서 조사기간 내에 실제로 그 사업체의 소유를 떠난 부분의 총량을 말하며 이를 시판과 수출로 구분한다.

1) 시판은

즉 가) 외부에 판매한 것 (외상판매 포함)

나) 동일 기업체 내에서 타 사업체에 반출된 것.

다) 견본 또는 선물로서 증정한 것.

라) 그 사업체에서 사무용 또는 급여용으로 출고한 것.  
의 합계량을 말하며

2) 수출은

가) 외국에 수출한 것.

나) 외국에 전본 또는 선물로 증정한 것.

의 합계량을 말한다.

(사) 과부족 보정량

그 월간에 화재, 도난 등의 재난에 의하여 결손 처분된 량을 말하며 판매한 제품중 반송 등에 의하여 발생한 증감량도 이에 포함된다.

증감은 「+」 「-」의 부호로 표시하며 적요란에 반드시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아) 월말 재고량

그 월의 말일에 그 사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품량을 말한다.

수탁가공한 제품과 이미 판매되었으나 미출고된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

당월말 재고량 = 익월초 재고량

3) 원재료, 연료 및 동력

원재료라 함은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한 주원료와 부분품, 부속품, 용기 등과 같은 보조 원료를 말한다.

자기 원재료를 공급하고 위탁제조시킨 경우의 원재료는 포함시켜야 하나 타 사업체로 부터 수탁생산을 맡은 경우에 타 사업체로 부터 지급된 원재료는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가) 원재료번호 및 원재료명

(1) 원재료 번호

• 지정원재료 분류표 좌측에 있는 숫자를 기입한다.

제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단위만 틀려도 기계집계의 결과가 전혀 틀리게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2) 원재료명

• 지정원재료 분류표 • 에 의하여 기입하되 단일 동분류표에 분류되어 있지 않은 원재료를 생산 또는 사용한 경우 구체적인 명칭을 기입한다.

나) 규격 및 단위

(1) 규격

원재료에 대한 규격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각 원재료의 규격을 그대로 적는다. 단, 동일명칭의 원재료라도 현저한 규격의 차이가 있으면 규격별로 기입하며 단일규격으로 환산이 가능할 때는 이를 환산하여 기입한다.

(2) 단 위

각 원재료의 단위는 • 지정원재료 분류표 • 에 지정된 단위를 사용하되 이것이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단위와 다를 때는 지정단위로 환산한다. 만약, 원재료명을 • 지정원재료 분류표 • 에서 찾지 못하여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그 수량의 단위를 • 미터법 • 에 의하여 기입한다.

다) 월초재고량 (전월말 재고량)

그 월의 초일에 그 사업체가 보유하였던 원재료의 량을 말하며 이를 국산원재료와 수입원재료로 구분한다.

라) 구입량

그 월중에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외부로부터 현금 또는 의상으로 구입한 량을 말하며 동일 기업의 타 사업체로부터의 반입량도 여기에 포함되며 국산품과 수입품으로 구분한다. 여기에서 수입원재료라 함은 그 사업체에서 수입한 원재료는 물론 무역회사를 통한 수입원재료도 포함된다

라) 자가생산량

사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중간제품을 말한다.

마) 사용량

광산 및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그 월간에 실제로 사용된 원재료량을 말하며 위탁 생산을 위하여 타사업체에 공급한 량도 포함한다.

바) 과부족 보정량 (過不足 補正量)

「제품」에서의 「과부족 보정량」에 준하며 구입한 원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호를 붙여서 기입하고 적요란에 「판매」라고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사) 월말 재고량

「제품」에서의 「월말 재고량」에 준하며 국산품과 수입품으로 구분한다.

4) 고용 및 급여

가) 피고용자 (被僱傭者)

① 피고용자라 함은 일정한 산정기준에 의하여 임금이나 봉급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급여를 받는 모든 남녀 종업원을 말한다.

② 피고용자에는 상용 (常用), 임시 및 일고 (日雇) 종업원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장기 결근자 군복무자는 제외시킨다. 또한 위탁제조를 시킨 경우 수탁 (受託) 업체의 종업원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피고용자는 다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생산 종업원

제품 또는 광산물의 생산에 직접 관련있는 현장 종업원 또는 보조적인 작업에 종사하는 보조원을 말한다.

현장에서 일하더라도 실제로 육체노동을 하지 않는 사무원, 지배인, 중역 등은 생산 종업원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가) 제조업의 경우

제조(製造), 가공(加工), 검사(檢査), 검량(檢量), 입하(入荷), 저장(貯蔵), 조작(操作), 포장(包裝), 입고(入庫), 출하(出荷), 보수(補修) 등의 업무와 보조적인 생산품의 생산업무, 생산공정의 기록사무 기타 상기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생산종업원이다.

(나) 광업의 경우

채광(採鉦), 굴진(掘進), 경내지주(坑内支主), 권양(捲揚), 환기(換氣), 배수(排水), 채공(穿孔), 발파(發破), 분쇄(粉碎), 선광(選鉦), 검사(檢査), 저장(貯蔵), 출하(出荷), 보전(保全) 등의 업무와 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사무 및 기타 종업원

생산종업원을 제외한 모든 피고용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생산 작업에 직접 관련하지 않고 뒤에서 기술적, 전문적 그리고 서기적(書記的)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이들의 보조원, 즉 급사, 수위, 승용차의 운전사, 판매 및 선전을

위한 자동차의 운전사들을 말하며, 인사, 기획, 경리, 선전, 판매, 배달 등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작업을 하지 않는 종업원을 말한다. 그리고 보수를 받는 지배인, 중역 등도 이에 포함한다.

나)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

- (1) 「자영업주」란 사업체의 주인으로서 급여를 받지 않으며 실제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2) 「무급가족 종사자」란 자영업주와 가족 관계가 있는 자로 사업체의 업무에 무급으로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주당 24시간이상 종사한 자에 한함)

다) 월말종업원수

그 월말일 현재의 그 사업체 종업원수를 말한다. 만약 월말 현재로 조사가 곤란할 때에는 그 월 말일에 가장 가까운 급여 계산일을 기준한 종업원수를 기입하여도 무방하다.

라) 월중 연근무인원수 (月中延勤務人員數)

그 월중에 실제로 근무한 종업원의 연인원수, 다시 말하면 일별근무인원 (日別勤務人員) 의 월중 누계를 말한다.

(예) 월중 조업일수를 26일이라 하고 처음 10일간에 15명씩 그리고 다음 6일간에 20명씩, 나머지 10일간에 25명씩 근무하였다면 월중 연근무인원수는 다음과 같다.

$$15 \text{ 명} \times 10 \text{ 일} + 20 \text{ 명} \times 6 \text{ 일} + 25 \text{ 명} \times 10 \text{ 일} = 520 \text{ 명}$$

마) 조업일수

그 사업체가 월중에 실제로 생산활동을 영위한 일수를 말한다. 1일 24시간을 교대로 작업을 계속하였어도 조업일수는 1일로 계산한다.

5) 적 요

(가) 생산 출하 및 원재료 증감요인

제품의 생산, 출하, 재고량과 원재료등이 전월과 비교하여 증가 또는 감소되었을 때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증감요인을 밝혀 기입하여야 한다. 만일 기입되지 않은 것은 지도원이 접수시 "체크"하여 반려토록 되어 있으니 조사표 작성시 증감 여하에 관한 요인을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

(예) 시설 보수로 인한 조업단축(10日~15日까지)

수출수요 증대(미국, 캐나다)

관납 증대(농협, 철도청)

전축비수기 등

(나) 고용 및 급여 증감요인

고용 및 급여에 대하여서도 종업원 및 급여액에 차이가 심하면 반드시 증감 요인을 밝혀 기입하여야 한다.

(예) 종업원수 증가는 임시종업원 ○○명 증가, 급여액

증가는 능률급 지급, 보나스( )%지급, 정기( )

% 승급, 특별시간외 수당지급 등

(다) 기타 참고사항

휴업, 폐업, 이전, 소재불명 등의 유고 내용을 자세히 기입한다.

다. 금액조사표(Ⅱ-A) 기입요령

1) 제 품

가) 원제품

구입 원재료 또는 자가생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직접 생산한



최종 제품과 원재료 또는 반제품을 타사업체에 공급하여 위탁생산한 제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조 공정상에서 생긴 부산물이나 폐품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음의 수탁 제조 및 수리수입액에 포함된다.

나) 수탁제조 또는 수리수입액

수탁제조 수입액은 원재료 또는 반제품을 타사업체로부터 공급 받아 제조 또는 가공하여 주고 그 월중에 기성고분(既成高分)에 대하여 받은 수입액(미수금 포함)을 기입한다. 그리고 수리수입액이라 함은 타인의 소유물을 수리하여 주고 받는 수입액(미수금 포함)을 말하며 제조공정상에서 생긴 부산물이나 폐품등을 포함한다.

다) 월초 제품재고액(전월말 제품재고액)

그 월의 초일에 사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던 완제품 및 기타 부산물, 폐품 등의 재고액을 말하며 평가는 장부가격 또는 생산 원가에 의한다. 단, 장부 가격이 없거나 원가의 계산이 곤란할 경우에는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이미 판매된 제품의 미출고분(未出庫分)은 재고로 보지 않으며 또한 수탁생산(受託生産)한 제품은 수탁 사업체의 재고액에서 제외된다.

월초 재고액=전월말 재고액

라) 출하액

(1) 시 판

그 사업체가 직접 생산하였거나 위탁생산한 모든 제품에 대한 그 월중의 판매액을 말하며 위탁판매 및 의상판매도 이에 포함된다. 또한 동일기업체 내의 타 사업체에 반출한 것, 견본 또는 선물로서 증정한 것, 그 사업체 내에서 사무용 또는 급여용으로 직접 소비한 것도 환산평가하여 포함한다.

반면에 구입물품을 가공하지 않고 원상대로 재판매하였거나

수탁생산한 제품의 판매는 그 사업체의 출하로 보지 않는다.

출하 제품의 평가는 공장 인도<광산물은 최근 역도(最近 賦渡)>가격에 의하며 물품세 부과 대상품인 경우에는 동 세금을 포함하는 가격으로 한다.

## (2) 수 출

수출한 제품은 계약 당시의 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 평가하여야 한다.

### 라) 월말 재고액

사업체가 그 월의 말일에 보유하고 있는 완제품 및 기타의 재고액을 말하며 평가는 장부 가격 또는 생산 원가에 의한다.

생산 원가에 의한 계산이 불가능하거나 장부 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 바) 과부족 보정액

그 월간 화재, 도난 등의 재난에 의하여 결손 처분된 액과 재물 조사시 발견한 증감액을 말하며 판매한 제품증 반송등에 의하여 발생한 증감액도 이에 포함된다.

증감은 「+」, 「-」기호로 표시한 금액을 기재하고 적요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2) 고용 및 급여

물량조사표의 「고용 및 급여」에 준한다.

다만 한 사업체에서 물량조사와 금액조사를 동시에 작성할 경우에는 고용 및 급여 통계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금액 조사에서는 조사치 않고 물량조사표에만 조사 기입한다.

## 3) 적 요

물량조사표 적요란 기입요령에 준한다.

## 라. 광공업생산자 판매가격조사표 (Ⅲ) 기입 요령

### 1) 조사대상 품목 및 사업체

광공업 생산자 판매가격 조사 지정품목 일람표에 기재된 품목에 대하여 조사한다.

그리고 각 사업체에서 조사하여야 할 품목은 별책 「사업체별 조사대상 품목표」에 지정되어 있다.

### 2) 품목번호 및 품목명

품목번호와 품목명은 별책 「사업체별 조사 품목표」 및 「가격조사 지정품목 일람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 3) 품질규격 및 단위

「사업체별 조사 품목표」 및 「가격조사 지정품목 일람표」에 지정된 품질규격 및 단위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따라서 그 품질규격 및 수량 단위를 기입한다.

### 4) 판매 가격

판매 가격은 공장 인도 가격 (광산은 최근 역도 가격)으로서 용기 포장을 요하는 품목은 그 비용을 포함하고 물품세 또는 유류세의 부과 대상인 품목인 것은 동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 5) 평균 가격의 계산방법

가격은 그 월의 월중 평균 판매가격, 즉 지정품질 규격에 대한 그 월중의 일별 판매가격의 월평균 가격으로 한다.

수출품목일 때는 F.O.B 가격으로 하되 조사표상의 원화 표시를 지우고 미화로 기입하여야 한다.

### 6) 조사표 작성상의 유의사항

가) 조사기준월 (     년     월분) 조사구 및 산업분류 (지정품목 일람표 참조) 등의 기입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나) 이 조사는 지정된 품질 및 규격에 의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하는 것이므로 품질 및 규격을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
- 다) 지정된 수량 단위를 명기하여야 한다.
- 라) 수출품일 때는 미불가격으로 기입하여야 한다.
- 마) 조사표상 전월 가격란에 기입된 가격은 전월에 보고된 가격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 바) 전월과 비교하여 현저한 가격의 등락(登落)이 있을 경우에는 등락 사유를 반드시 「적요」란에 기입한다.

마. 전기업동태통계 조사표 (I-B) 기입요령

1) 발전량

가) 총 발전량

그 월중에 발전한 총 발전량을 각 시도별로 기입한다.

나) 자기소비 전력량

각 발전소가 그 월중에 발전을 위하여 소비한 전력량으로서 본사, 지점 및 각 영업소의 소비량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순 발전량

총 발전량에서 자가소비 전력량을 차감한 전력량을 말한다.

2) 종합 손실 전력량

각 단계의 송전 및 배전 과정에 생기는 손실 전력량의 총계를 말한다.

3) 수용 전력량

그 월중에 판매한 수요 부문별, 전력량을 기입한다.

가정용은 일반 가정에 공급한 전력량이며 산업용은 농림수산업,

광업, 제조업 및 기타 산업(서비스, 전철 등)별로 공급한 전력량을 기입하고 기타는 관, 군, UN군, 사업자용(한전 사업소) 등에 공급한 전력량을 말한다.

4) 고용 및 급여

물량 조사의 「고용 및 급여」에 준한다.

#### 4. 검토 및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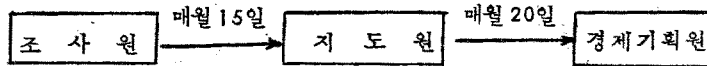
## 4. 검토 및 제출

### 가. 검토

접수된 조사표가 질의조회나 재조사 지시를 받지 않도록 반드시 다음 내용을 철저히 검토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1) 조사기준일 (   년   월분 ), 조사구 및 사업체번호 산업분류번호 등의 기입누락 여부
- 2) 제품의 단위에 있어서 「지정품목 분류표」에 지정된 수량단위의 사용여부
- 3) 품목명 및 품목번호가 「지정품목 분류표」에 지정된대로 기입되었으며 사업체 명부상에 지정된 생산품목 누락 여부
- 4) 월중의 생산량과 사용원재료량과의 합리성 여부
- 5) 전월말재고 ( 이미 제출된 조사표에 기재된 것 ) 과 금월초 재고의 일치 여부
- 6) 「월초재고량 + 월중생산량 - 자가사용량 - 출하량 ± 과부족보정량 = 월말재고량」의 성립 여부
- 7) 원재료에 대한 단위가 「미터법」에 의하여 기입되었는지의 여부
- 8) 원재료에 대하여 「월초재고량 + 월중수입량 - 월중사용량 ± 과부족보정량 = 월말재고량」의 성립 여부
- 9) 월중의 생산량과 고용 및 급여란의 종업원수와의 타당성 여부
- 10) 조사된 숫자의 증감이 전월과 비교하여 심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적요란에 기입하여야 한다.
- 11) 기타 기입사항의 옳기 또는 누락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나. 제출



- 1) 조사원이 직접 답사하면서 배부한 조사표는 늦어도 실사기간 최종일까지 그 전부를 회수하되 개개의 조사표 오기 누락 등이 없는가를 「조사표 검토요령」에 의거 검토한 후 불완전한점이 있으면 즉시 재조사하여야 한다.
- 2) 매 실사월의 조사표를 제출함에 있어서는 조사표 작성이 완료 되는대로 5매 내지 10매씩 분할하여 제출하되 늦어도 그 달의 15일까지는 담당 조사표 전부가 지도원에게 필착토록 하여야 한다.
- 3) 지도원은 이를 접수되는 대로 일괄취합하여 중앙에 송부하되 담당구내 조사표 전부를 20일까지 중앙에 제출해야 한다.
- 4) 기타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조사표 회수가 늦어지면 지연 사유서를 조사원은 담당지도원에게 지도원은 중앙에 제출하여야 한다.



## < 부      록 >

1. 문제점 및 유의 사항
2. 광공업 동태조사 지정품목 분류표
3. 금액 조사를 실시하는 산업
4. 도량형 단위 환산표
5. 조사표류 및 서식

## 1. 문제점 및 유의 사항

### 일반적인 사항

34

이 문제점 및 유의사항은 그 동안 광공업동태조사를 시행한 결과 일어나는 제문제점과 실사 과정에서 참고해야 할 요점을 수록한 것으로서 본 조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반드시 숙지하고 임해야 하며 차후부터는 이런 문제점과 조사질의나 재조사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1) 기계집계로 전양함에 따라서 해당사업체의 지정품목은 계절에 따라 생산이 없거나 주문이 없어서 생산이 없을지라도 품목번호 품목명 단위를 매월 보고한다. 단, 사업체에서 앞으로 생산가능성이 도저히 없을 경우 그 내용을 자세히 보고하여 조사중지를 받을 수 있다.

(2) 지금까지 규격·란의 사용이 거의 안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광업, 화학, 기계제조업 등은 각 품위, 함량, 용량 등의 품질, 규격을 반드시 기입토록 한다.

또한 동일 명칭의 품목일지라도 규격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은 규격별로 구분하여 기입해야 한다.

(3) 유고사업체가 발생하면 즉시 지도원에게 그 사유를 보고 하여야 한다.

폐업, 이전, 소재불명, 전업사업체도 조사중지가 있을 때까지 조사표를 제출하며 사업체명칭 및 대표자 전화번호 등의 변경시에는 즉시 사업체명부를 정정한 후 보고하고 조사를 계속한다.

지도원은 유고사업체보고 중 이전의 경우는 담당구역을 확인하여 이전조치한 후 그 결과를 중앙에 보고하고 여타 유고 사항에 대해선 취합하여 중앙에 일괄 보고 한다.

(4) 조사원은 조사원기록부를 잘 활용해야 한다. 조사원기록부에 조사 사항을 기록하여 다음 조사시 증감체크와 월초 재고량 일치여부, 조사의 누락이 오기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조사표본 실시 긴급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5) 기타 문제되는 품목은 조사지침서 부록인 「제품해설집」을 활용토록 한다.

산업소분류 210.230.290 광업

(1) 조사상의 규격란에는 아래와 같이 품질규격을 반드시 기입한다. 품질규격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판매 당시에 표준이된 규격 또는 월별 평균 규격으로 기입한다.

예 : 무 연 탄 ; 5,500 Cal  
찰 광 석 ; Fe 50 %  
중 석 광 석 ;  $WO_3$  70 %  
금 광 석 (금괴) ; Au 99.9 %  
은 광 석 (은괴) ; Ag 99.9 %  
동 광 석 ; Cu 6 %  
연 광 석 ; Pb 40 %  
아 연 광 석 ; Zn 50 %  
몰리브데늄광석 ;  $MOs_2$  90 %  
석 회 석 ; CaO 50 %  
인 상 흑 연 ; Fe 80 %  
토 상 흑 연 ; Fe 75 %

(2) 금광석 및 은광석은 제련된 금괴 및 은괴만을 조사하되 제품란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해서 이종으로 기입한다.

예 : 품목번호	품 목	규 격	단 위
2302301	금	99.9%	g
3720101	금괴	99.9%	g
2302302	은	99.9%	g
3720102	은괴	99.9%	g

규산질금광석을 생산하여 자가제련하는 광산의 경우에는 반드시 월별로 적요란에 「제련구분:자가제련」이라고 기입하고 생산량 및 출하량을 제품란에 기입한다.

유화질 금광석을 생산하고 생산된 원광석을 매광 하는 광산의 경우에는 반드시 월별로 적요란에 매광처와 품위별로 매광량(원광석)을 기입 보고 한다.

(3) 혼합 광석의 경우에는 함유량이 많은 것으로 분류하여 조사한다.

단, 구분이 명확한 혼합광은 평균(표준) 함유량에 따라 구분 조사한다.

(4) 석회석 조사시에 자체 생산한 석회석으로 시멘트를 제조하였을 경우에는 원료로 재투입하는 전량을 「자가소비량」으로 기입한다.

(5) 수출광석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요란에 매월 수출국명과 수출량을 기입한다.

예 ; 수출량 3,000 ㎏ (미국 1,000 ㎏, 일본 2,000 ㎏)

(6) 품목명 분류시 주의를 요하는 품목

(가) 백토는 고령토에 포함하여 조사한다.

(나) 취수연은 모리부테늄에 포함하여 조사한다.

(4) 흑연은 인상흑연과 토상흑연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조사한다.

(7) 무연탄

무연탄의 재고는 산지재고, 역두재고, 소비지재고,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사업체의 재고라 함은 산지 또는, 역두, 소비지재고를 불문하고 판매행위가 성립되지 않은 한 그 사업체의 관리하에 있으면 소재에 관계없이 사업체 재고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와 반대로 비록 산지에 있는 재고라 할지라도 판매(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사업체 소유가 아니므로 출하로 간주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산업소분류 311-312 식료품

(1) 분유 및 연유에 청정유 또는 시유(목장우유)를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청정유라 함은 원유를 냉각시킨다음 저유를 거쳐 여과시킨 것을 말하며 시유라는 생우유를 살균 처리한 원상 그대로의 우유이며 연유는 생우유를 탈수농축 시킨것으로 시유와 구별되며 분유는 완전 탈수시켜 분말된 것이다.

(2) 냉동 해산물에 냉장이나 빙장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냉동 해산물은 일반적으로  $-20^{\circ}\text{C}$  이하의 저온으로 급냉시켜 해산물 자체를 얼게하여 냉장창고에 보관하는 것이며 냉장은 냉동을 시키지 않고 냉장창고에 보관되는 것이다.

빙장은 해산물과 어류를 혼합하여 부패(변질)를 방지하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원양어선에서 냉동시킨 것은 냉동해산물에서 제외되며 원양어선에서 냉동시킨 것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반입하여 다시 냉동시킨 것은 포함 조사한다.

- (3) 어 및 해산물 통조림의 단위를 관(Can) 또는 상자(C/S) 등으로 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kg으로 환산하여 조사 기입한다.
- (4) 해산물 통조림에 축산물 통조림(쇠고기등)이나 농산물 통조림(과일통조림)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수산물 통조림만 조사한다.
- (5) 밀가루는 민수용 관수용을 포함 조사한다.
- (6) 식빵, 전빵, 사탕과자의 단위는 kg이다. 개 또는 봉지로 보고하여서는 안되며 kg으로 환산하여 조사보고 한다. 초코렛, 드롭프스, 카라멜, 제리, 캔디등은 설탕과자에 포함시키나 유과, 경과, 다식등은 제외한다.
- (7) 된장에 춘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춘장은 중화요리에 사용하는 검은 빛갈이다.
- (8) 엿의 단위는 kg이다. 물엿 역시 kg으로 환산 조사한다.
- (9) 마가린에 쇼팅도 포함된다.
- (10) 이스트에는 생 이스트와 건조이스트(dry-yeast)가 있는 데 포함 조사한다.

산업소분류 313 음료품

- (1) 소주나 탁주에 있어서는 동종류와 주종끼리 사업체를 통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통합된 사업체와 남아 있는

사업체(현재 생산하는 사업체)를 명백히 구분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탁주의 경우는 각도시의 단위까지는 통합이 완료되었으니 합동관리 위원회 산하에 포함된 사업체와 현재 생산중인 양조장을 구분하여 중복과 누락이 없도록 한다.

(2) 탁주생산업체에서 약주도 생산하는 경우에는 약주에 대해서도 조사하되 탁주와 약주를 별란으로 기입하여 보고한다. 사이다와 콜라는 민수용과 군납용을 포함하여 조사표에 기입한다.

(3) 소주, 주정, 탁주, 청주, 사이다, 콜라의 지정 단위는 *kl*이다.

그러므로 사업체에서 「되」 혹은 「병」으로 응답할 경우에는 이를 *kl*로 환산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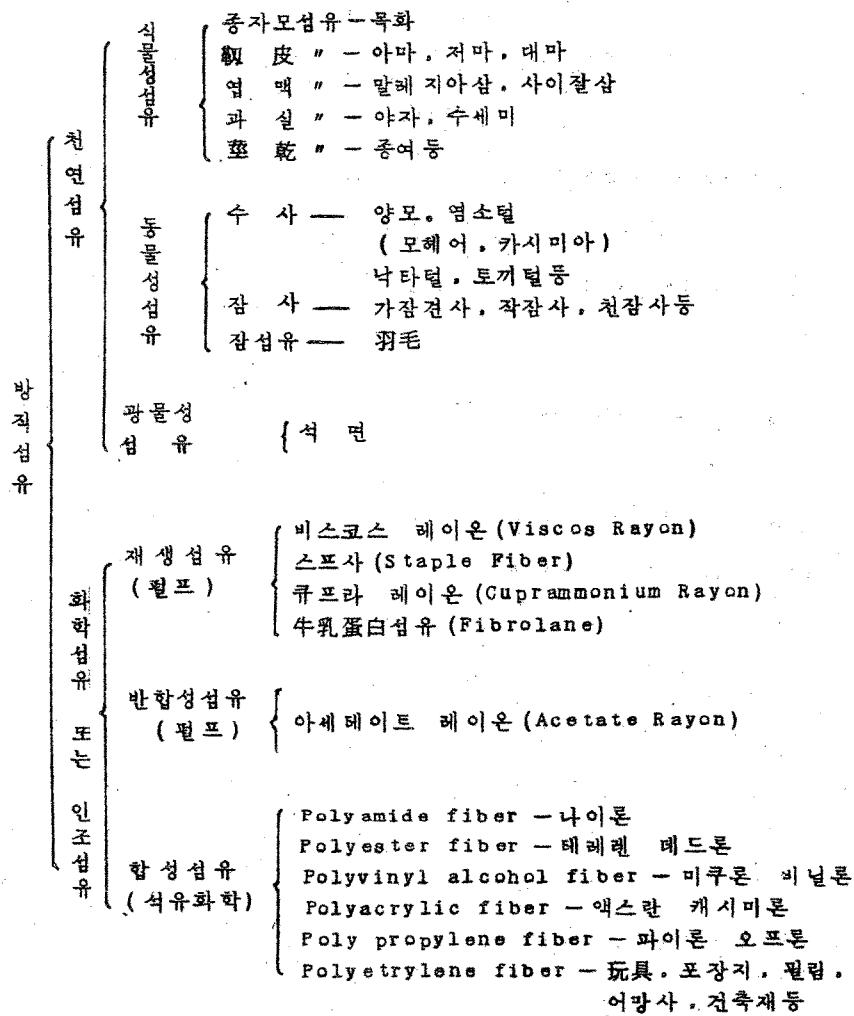
$$1 \text{ 되} = 1.8 \text{ l} \quad 1 \text{ Kl} = 556 \text{ 되}$$

(4) 동일품목으로서의 품질규격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은 합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기입한다.

	품 목 명	규 격	단 위	생 산 량
3131201	소 주 } X	25°	<i>kl</i>	200
3131201		30°	<i>kl</i>	300
3131201	○ 소 주	25 ~ 30°	<i>kl</i>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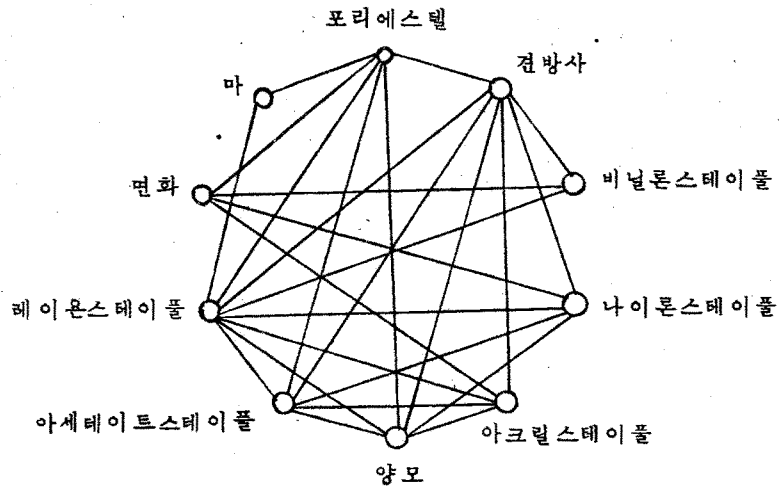
산업소분류 321 섬유제조업

(1) 섬유분류





(2) 현재각섬유의 혼방되는 관계도표



특수제품을 제외 하고 일반적으로 혼방사는 상기도표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 때 혼방사는 섬유의 종류는 2종 이상인 경우도 많다.

(3) 혼방사 및 혼방적물의 기준량 비율 (교직포함)

(가) 면과 화학섬유의 혼방

- ① 면과 일종의 타 화섬과 혼방일 경우, 기준비율은 50:50으로 하되 동등인 경우에는 혼방된 화섬명을 우선적으로 호칭한다 (합성·아세테이트·면·비스코스순)
- ② 면과 이종 이상의 타 섬유와 혼방일 경우 중량비율이 가장 큰 섬유명을 우선적으로 호칭하고 동등일 때는 합성섬유, 아세테이트, 비스코스순 (이는 가격순임)에 의하여 호칭한다.

(나) 모와 화섬의 혼방

- ① 기준비율을 60(화섬) : 40(모)로 하고 기준비율일 때는 모를 우선적으로 택한다.

(예 : 혼방소모사, 모혼방직물)

- ② 모와 이종 이상의 타 섬유와 혼방일 경우에는 혼방비율이 가장 큰 섬유명을 우선적으로 택하고 동률일 때에는 모, 합성섬유, 아세테이트, 비스코스 순에 따라 우선적으로 호칭한다. 단, 모가 40% 미만일 경우에 한함.

(다) 견과 화섬의 혼방

- ① 기준 중량비율을 30(견) : 70(화섬)으로 하고 동률일 때 견을 채택한다.

(예 : 견혼방직물)

- ② 견과 이종 이상의 타화학 섬유와 혼방일 경우에는 중량비율이 가장 큰 것을 택한다. 단, 견 30%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 ③ 견과 모의 기준 혼방비율은 40(견) : 60(모)으로 하고 동률일 때는 견을 택한다.

(라) 이종의 화섬혼방

등분을 이상을 점한 섬유명을 택하되 동률일 경우에는 합성 섬유·아세테이트·비스코스순으로 호칭한다.

※ 혼방사 및 혼방직물 조사시는 조사표의 우측란에 반드시 혼방 비율을 기록할 것.

또한 사업체의 생산품을 어느 품목으로 채택하여야 좋을지 자신이 없을 때는 적요란에 원재료명과 혼방비율을 명기하고

견본을 조사표 후면에 첨부하여 보고할 것 모든 혼방사 및 혼합직물(교직포함)은 상기요령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하여 보고한다.

(4) 품목구분 요령

- ① 견혼방사 : 누에고치로 된 견방사와 타 섬유가 혼방되었으며 견방사가 30% 이상을 차지할 때 견혼방사라 하고 인견사와 타 섬유(견방사 제외)와 혼합되었을 때 인견사의 혼방 비율이 크다고 하더라도 견혼방사가 아니고 인견혼방사로 한다.

그러므로 견혼방직물과 인견혼방직물의 구분방법에 있어서도 견혼방직물은 누에고치로 된 견직물과 타 직물이 혼방되었을 때이며 인견혼방직물은 화학섬유인 인견직물과 타직물이 혼방되었을 때를 말한다.

- ② 면 사 : 순면사 및 면혼방사 포함

※ 면혼방사의 식별기준은 혼방사 요령에 의한다.

- ③ 재생섬유방적사 : Staple fiber (원료: 펄프 linter 등의 섬유질) 및 비스코스 filament (비스코스인견사)를 칭함. 현재 비스코스인견사는 흥한 화학공업 Co과 임직공장(수탁업체)에서만 생산되므로 타 업체의 생산품중 인견사로 조사되는 예가 허다하니 그러한 경우 반드시 원재료 난을 활용하여 조사지시를 받도록 한다.

- ④ 합성(화학)섬유방적사 : 섬유화학공정을 통하여 나프사물 원료로 생성된 일체의 섬유 즉 재생섬유 반합성 섬유를

제외한 섬유로 된 Fiber와 filament 및 일체의 화학 섬유가 방적할 수 있도록 제공정을 완료한 사(糸)의 상태. 단, 합성장섬유사(filament)로서 직접 방적할 수 있는 합성섬유도 포함시킬 것.

⑤ 亜麻糸: 麻糸에는 亜麻, 苧麻, 黄麻, 大麻, 라미 등이 있으나 이중 亜麻를 재료로 하여 생산된 사만을 칭함.

참고: 현재 태평방직주식 Co와 그 임직공장의 독점 품목임을 강조 한다.

⑥ 생 사: 누에고치는 上繭, 中繭, 下繭, 雙繭(玉繭, 王고치)으로 대별되며 그 중 한견으로 만들어진 실.

上繭: 견형이 바르고 견층이 두껍고 오염되지 않은 결점이 없는 고치

中繭: 견형이 바르지 않은 것과 견층이 얇으나 오염도가 적은 고치(簇着繭·不正形繭·오견·면견 파종견, 동절견 등)

下繭: 死籠繭·穴繭·또는 孔明繭 薄皮繭 등

雙繭: 두마리 이상의 누에가 공동으로 한개의 고치를 지은것

⑦ 견방사: 생사를 제조할 수 없는 부잡사, 페니·박면 출자견, 찌꺼기 고치, 생피저, 양견, 쉬은고치 등으로 제조된 실

⑧ 순소모사: 비교적 길고 간추려진 섬유를 사용하며 방적공장에서는 섬유를 잘 빚어내려 평행직선 모양으로 간추려 단섬유를 제거하는데 노력한다. 이때 단섬유로 된 실이 순방모사가 된다.

⑨ 순소모직물: 순소모사로 짠 직물, 고급저로서 신사복 숙녀복에 사용한다.

⑩ 순방모사: 장섬유를 간추리고 난 나머지 단섬유를 칭하며 합성섬유사가 10%정도 포함된 것도 순방모사로 조사한다.

- ⑪ 순방모직물 : 순방모사로 짠 직물. 저급지로서 모포, 겨울용 오바, 홈스방에 사용한다.
- ⑫ 모혼방직물 : 상기 모직물과 타 직물이 혼방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때 혼방비율을 기재할 것.
- ⑬ 혼방합성섬유직물 : 2개 이상의 섬유가 혼방되어 제조된 직물중 합성 섬유가 50% 이상 차지 하였을 때를 말한다. (단, 모와 혼방일때 60% 이상, 견과 혼방일때 70% 이상)
- ⑭ 각종 화학섬유연사 : 2단사 이상을 꼬아 만든 실. 합사는 꼬지않고 합해 놓은 실. 이는 화학섬유에 한하며 면사는 제외된다.  
 흑견연사 또는 연신사 외장연사라 할 때도 연사로 분류한다.  
 어망사와는 용도를 기준하여 구분한다.
- ⑮ 타올 : 일반 세면용 타올 (가로 84cm x 세로 33cm 정도) 1매 = 0.3㎡ 정도로서 제반타올 제품도 포함한다.  
 즉 시트 카바등 큰 타올은 별도로 보고하되 그 넓이를 반드시 일반 세면용 (0.3㎡) 으로 환산하여 보고할 것  
 특히 타올은 규격이 다양하므로 매수와 병행하여 ㎡로도 조사한다.
- ⑯ 화섬사양말 : 단위는 킬러 천족을 사용하고 순모, 순면 양말은 제외하며 화섬사 60% 이상의 혼방사로 된 양말은 포함한다.
- ⑰ 면직물에는 광목 (소창포함), 내광목, 육광목, 당목, 면범포, 포프린, 응, 면부지물 포함하여 면직물이라 기입한다.  
 (단 글덴을 제외)  
 특히 펠릭스타킹 타이스는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양말로 분류하여 조사한다.

(5) 자가사용량의 문제

이미 조사되고 있는 지정품목 중 다음의 품목은 출하중에 자가 소비에 타 제품 생산을 위해 재투입에 종당되는 비중이 크다. 이는 출하에서 분리하여 조사한다.

자가소비량을 조사하는 경우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면사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광목과 면복지를 동시에 생산할 때는 반드시 면사 생산량중 의부에 출하되는 량과 광목과 면복지를 생산하기 위하여 재투입되는 부분이 있다.

면사 —— 광목, 당목, 포푸린, 면복지, 용등 일반 면직물

합성섬유사 —— 순합성섬유직물

혼합합성섬유사 —— 합성혼방직물

순소모사 —— 순소모직물

혼방소모사 —— 모혼방직물

순방모사 —— 순방모직물

생사, 견방사 —— 순본견직물, 견혼방직물

연사, 어망사 —— 어망, 로프

재생섬유사 (인견사, 스포사) —— 재생섬유직물

(6) 메리야스의의 (Sweater 포함) 중

다음 품목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Y-Shirts nylon 내의, 이너렉스 부라우스, 동내의, 스텝스 등은 제외한다.

(7) 섬유제품중

지정단위가 m로 되어 있는 품목을 업체사용단위 yds로 조사되고 있는데 규격이 다양하므로 반드시 m로 환산하고 규격란을 활용한다.

예: ① 갈포벽지 1 Roll = 6,6885 m 된다.

② 직물 폭이 36"이며 길이 1yd는 0.9144m x 0.9144m로 계산해서 0.8361㎡가 된다.

(8) 지정품목중

사업체에서는 민수용 관수용 수출용을 분리하여 생각한다하더라도 종합 조사하여 누락이 없도록 한다.

또한 사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별명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순합성섬유직물: 나이론, 다후다, Jersey, 앙고라, 폴리텍스, 케미칼, 트리코트

순본견 직물: 훌치기원단, 시보리원단, 양단

재생섬유직물: 인견양단

합성섬유방직사: Stretch사, nylon사, filament사, 포리에스텔사, 테포린울직사, 카시미론사, 아크리릭사, 中細糸 (단 fiber는 제외함)

사업체에서 견방사가 주방사, 수방사, 견수방사 등으로도 분류되는 것도 견방사로 조사할 것.

산업소분류 322 외복제조업

(1) 재고액은 장부가액 또는 생산원가에 의하며, 생산원가에 의한 계산이 불가능하거나 장부가액이 없을 경우에는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2) 수출업체는 계약 당시의 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 평가한다.

(3) 적요난에는 증감요인을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예: Y사쓰 수출증대 (미국)

아동복 외의 수출증가 (인도네시아)

메리야스 내의 수요증가

산업소분류 323 가죽, 가죽대용품 및 털가죽제품

가) 우혁(牛革)을 제조과정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복수혁(갑피혁) Chromed upper

(용도) 고급구두 표면피혁 핸드백등에 쓰인다.

(성질) 부드럽고 원피의 털이 붙어 있는 부분을 말한다.

송아지의 것이 질이 좋다.

(2) 다리혁(Tanned upper)

(용도) 군화용, 중창(구두), 가방

(성질) 두껍고 단단하며 원피의 털이 붙은 부분이다.

(3) 이혁(Sole)

(용도) 작업용 장갑

(성질) 원피에서 복수혁이나 다리혁을 떼어 내고난 안부분을 말하며 이혁을 만든 다음은 수구래(야교의 원료)가 남는다.

(4) 저혁

(용도) 창용·바깥·공업용 혁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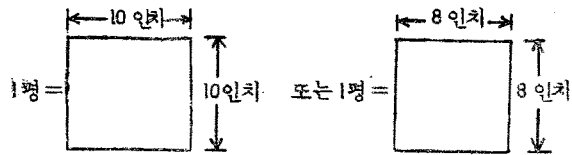
(성질) 특수 제조과정을 거친 생산원피의 털이 있는 부분, 복수혁보다 저혁이 비싸다.

※ 복수혁과 저혁을 합하여 우혁으로 조사하며 군화등 타생산품을 만들기 위하여 자가 소비가 있을 때는 출하와 구분하여 조사한다.

또한 사업체에서는 소가죽의 단위를 평(坪) 또는 매(枚)로 하여 생산량을 보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정 단위는 평이므로 반드시 이 지정단위로 환산하여 조사한다.



※ 단위 환산법



사방 10 인치 = 0.0645 m<sup>2</sup>

사방 8 인치 = 0.0413 m<sup>2</sup>

1 枚 = 30 ~ 40 坪

1 枚 = 3.3 m<sup>2</sup> (30 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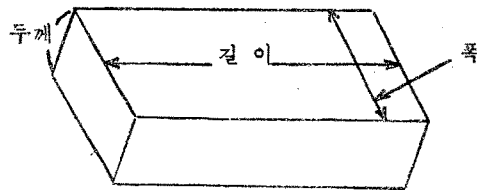
1 枚 = 3.7 m<sup>2</sup> (40 坪)

나) 공업용 가죽벨트의 지정단위는 m<sup>2</sup>/ply 이다.

그러나 사업체에서는 많은 경우 자(尺)나 ply 등의 단위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경우도 사업체에 문의하여 m<sup>2</sup>/ply로 환산하여 생산량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ply 의 규격: 길이 1자 폭 1인치 두께 1.4 mm

m<sup>2</sup>/ply 의 규격: 길이 1자 폭 1인치 두께 1.4 mm



다) 비닐계 트렁크류의 경우 그 규격이 다양하므로 용적이 .792 평방인치 (보통 12인치 x 11인치 x 6인치) 이상의 크

기만을 조사하며 학생용 책가방이나 서류 가방은 제외한다.

또한 비닐 이외의 원재료, 즉 직물제등은 제외한다.

라) 핸드백에서 학생용 책가방이나 구슬백, 지갑등은 조사 대상이 아니며 또한 피혁이나 합성피혁, P.V.C 이외의 원재료로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

산업소분류 331 제재콜크 및 나무제품제조업

이 산업에 속하는 각재, 판재, 합판, 하드보드등 모든 제품의 지정단위는  $m^3$ 인바 아직도 才, 매, B/F, S/F 등으로 조사되는 사례가 있으니 이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지정단위인  $m^3$ 로 환산하여야 한다.

즉 1才 $\approx$ 0.00334  $m^3$                       1  $m^3$ 는 300 才

1 B/F = 0.002359  $m^3$                       1  $m^3$  = 423.77 B/F

한 합판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환산한다.

규격			1매당 $m^3$	좌기두께의
가로 (F)	세로 (F)	두께 (mm)		1 S/F 당 $m^3$
4	8	3.2	0.0095232	0.0002976
3	6		0.0053568	
4	8	3.6	0.00107136	0.0003348
3	6		0.0060264	
4	8	4	0.011904	0.000372
3	6		0.006696	
4	8	6	0.017857	0.000558
3	6		0.010044	

산업소분류 332 가구 및 건구제조업

- (1) 연관품목을 유의하여 조사한다.  
즉, 장농을 만드는 사업체에서는 경대를, 또한 책상을 만드는 사업체에서는 의자를 대부분 제조하고 있으나 단일 품목만 조사 보고하는 경향이 있음.
- (2) 판매업체는 원칙적으로 조사에서 제외되나, 대부분 직영공장 또는 납품처를 가지고 있으니 누락 사업체가 없도록 한다. (직영 공장, 납품처를 색출할 것)
- (3) 철제품과 목제품을 구분하여 기입한다.
- (4) 대형찬장, 책장등은 장농에 포함한다.
- (5) 책상에서는 탁자, 티 테이블등은 조사에서 제외하며 학생용 책걸상은 규격란에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
- (6) 탁자, 티 테이블등은 식상에 포함한다.
- (7) 장지문은 건물건축시 소요되는 모든 목제문짝을 포함하여 조사 하되 대문은 제외한다.

산업소분류 341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1) 일반적으로 단위를 조사지침서에 지정한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예가 있는데 이점을 유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2) 백상지를 모조지로 보고하고 있는데 지침서에 의한 지정품목은 백상지이므로 백상지로 보고할 것.

- (3) 인쇄용지 및 필기용지를 중절지 또는 로루지로 보고하고 있는데 지정품목명칭을 사용하여 기입해야 한다.
- (4) 골판지원지는 골판지상자를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라이너지 (A원지, B원지 또는 K원지라고도 함)와 가운데의 일체구조의 매체가 되는 중심원지 (S원지) 등을 골판지 원지라고 하므로 이들을 묶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5) 골판지 상자 및 용기는 단위를 개로 조사하였으나 앞으로는 개와 묶으로 병행조사한다.
- (6) 창호지의 지정단위는 권이며 1권은 2,000매이다.
- (7) 판지를 마나라판지, 백판지, 회색판지 등 여러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구분하지 말고 이들을 총칭해서 판지로 조사한다.

산업소분류 342 인쇄출판 및 관련업

- (1) 일간신문의 조사단위는 천부(千部)이므로 단위미만은 4사 5일 할 것이며 일일발행부수의 월간누계를 조사한다.
- (2) 잡지, 정기간행물 및 비일간 신문외의 경우에 있어서 신규조사시에는 반드시 그 명칭을 비교란에 기입하여 보고한다.
- (3) 일반인쇄물을 권이나 부수로 조사하고 있는 예도 있으나 지정단위는 연(連)이다. 그러므로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재로 투입량으로 조사한다.

※ 단위환산법

1마퀴 = 2연(連)

- (4) 출판(발행)업에 있어서 신문사, 출판사는 인쇄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출판(발행)업무를 하고 있을 때에는 조사대상이므로 조사하여야 한다.
- (5) 신문, 정기간행물, 잡지등은 재고량이 있을 수 없으며 회사직원용 등도 출하량으로 간주하여 조사한다.
- (6) 일반 인쇄소에서 주문에 따라 인쇄되는 신문, 잡지류는 조사하지 말고 일반 인쇄물만 조사한다.

산업소분류 351.352 화학제품

- (1) 유산 (황산), 염산, 가성소다는 농도를 기입하여야 한다.  
(예시)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농도는 아래와 같다.  
황산 (98%, 35%, 40%) 등이 있는데 98%로 환산보고하여야 한다.  
염산 (35%, 100%) 등이 있는데 35%로 환산보고하여야 한다.  
가성소다 (40%, 46%, 97%, 100%) 등이 있는데 100%로 환산보고하여야 한다.
- (2) 압축산소는  $m^3$ 로 조사하여야 한다.  
 $7m^3=1$ 本
- (3) 아세치렌 가스는  $kg$ 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本(本), 또는  $m^3$ 은 반드시  $kg$ 으로 환산보고하여야 한다.
- (4) 글리세린은 비누공장에서 우지분해(牛脂分解) 과정에서 생산되는 것이니 비누공장 조사시는 글리세린 생산여부도 확인하여야 한다.
- (5) 페인트는 수성과 유성으로 구분조사하여야 한다.
- (6) 염료는 각종염료(직접염료, 산성염료, 유화염료, 형광염료)를 각각 구분하여 조사한다.
- (7) 의약품 조사에 있어서 만일 반응품이 있을 경우 그것이 재출하할 수 있는지 폐기처분을 할 것인지 구분하여 조사한 후 폐기 처분을 한 량을 재고액에서 제외시킨다.
- (8) 화장품향수는 향료에서 제외한다.
- (9) 화장수에는 밀크로션(milk lotion)을 포함하여서는 안되며 스킨로손(Skin lotion)만 포함하여 조사한다.

- (10) 화장크림조사는 바니싱크림, 폴드크림, 영양크림 등 각종 고품형크림을 전부포함하여 조사한다.
- (11) 화운데이손은 화장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 (12) 두발유에는 폼과드와 헤어오일(Hairoil)도 포함시켜야 한다.
- (13) 성냥조사는 대형성냥을 기준으로 1,000갑이 1단위가 된다.
- (14) 유산반토( $Al_2SO_4$ )를 생산하는 사업체는 보편적으로 유산을 겸해서 생산하는 사업체가 많은 편임. 특히 염산과 가성소다는 동일제조업체인 경우가 허다한 바 이를 참고하여 확인해야 한다.
- (15) 농약을 생산하는 사업체에서 거울철에는 유산, 가성소다, 염산등을 만드는 경우가 많으니 조사시 유의하여 확인 보고한다.
- (16) 분말세탁비누는 세탁비누에 포함하며 세탁용합성세제는 그 형태가 분말이건 고형이건 액체가건 모두 합하여 조사한다.
- (17) 화장품류를 조사할 때는 단위를 지정단위 kg으로 하여야 하며, 개(個)라든가 타(打)등으로 보고해서는 안된다.
- (18) 유산, 염산, 가성소다, 압축산소, 아세틸렌, 카바이드, 호루마링, 클리세린, P.V.C. 소다회, 암모니아 등의 품목은 자가 소비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 (19) 금액조사(의약품)시에는 약종류에 구매됨이 없이 업체에서 출하(판매)액, 재고액을 기입하여야 한다(단위:천원).

산업소분류 353.354 석유 및 석탄 제품

- (1) 윤활유에는 구리스를 제외한다.
- (2) 각종 연탄은 반드시 지정단위 %로 조사하여야 한다.  
(예시) 19 공탄 220 개 = 1 %  
31 ♣ 180 ♣ = 1 %  
49 ♣ 80 ♣ = 1 %

또한 각종 연탄공장이 통합 단일공장으로 되고 있으니 통합된 사업체 명부와 현재 남아있는 사업체명부를 보고하고 업무지시에 따라 중전의 사업체는 조사 중지한다.

산업소분류 355 고무제품

- (1) 방한화는 외부전체 면적에서 고무가 차지하는 면적이 크면 장화에 섬유 부분의 비중이 크면 포화에 포함된다.
- (2) 운동화는 혼련화(통일화), 노동화, 일반운동화로 세분하여 조사한다.
- (3) 고무호수의 지정단위는 m이다. 그러므로 사업체에서 권(卷)으로 보고하더라도 반드시 m로 환산하도록 사업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 1 권은 50척(尺) = 15.15m
- (4) 케미슈스는 조사 대상이 아니다.
- (5) 재생고무를 원료로한 고무박킹, 공등은 조사대상이 아니다.
- (6) 스폰지의 단위는 m이다.  
평이나 기타의 단위로 조사하였을 때는 반드시 m로 환산하고 환산불가능할 때에는 규격을 기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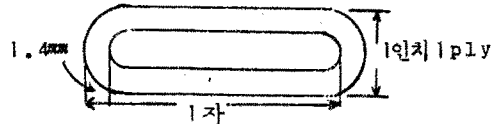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스펀지 1평의 규격은 가로 1자 세로 1자 두께 10mm이며 이 때는 1,000평이 1㎡이다.

- (7) 각종 고무벨트 (V형고무벨트, 평고무벨트, 콘베아벨트)의 지정단위는 ply이다. 그러므로 사업체에서 자(尺) 또는 m로 보고하더라도 반드시 ply로 환산하여야 한다.

$$m / \text{ply} = \text{폭 (幅)} \times \text{포층수 (布層數)} \times \text{길이}$$

$$1 \text{ply} = 0.33m / \text{ply}$$

벨트규격



길이 1 자

폭 1 인치

두께 1.4 mm

보통 평고무벨트는 두께가 3점 (1.4 × 3), 4점, 5점으로 되어 있다. 콘베아벨트는 보통 폭이 20 인치이다.

**중분류 36. 비금속광물 제품제조업**

- (1) 판유리는 2mm로 환산할 것 (단위 상자)

예시 규격 3mm, 200 상자를 생산한 업체가 있다면 환산하여 규격 2mm,  $3/2 \times 200 = 300$ 으로서

조사표에는 환산한 수치인 규격 2mm, 300 상자로 조사하고 포장 (상자) 되어 있지않은 경우에도 이를 환산하여 보고한다.

- (2) 시멘트블럭을 조사할 때는 보도용시멘트블럭을 구분 조사

한다.

- (3) 타일 조사시 오지타일, 내장타일, 외장타일, 모자익타일은 합산하여 보고한다.
- (4) 유리제품은 유리식기, 유리약병, 유리술병으로 구분하여 조사 보고하여야 한다 (새족잔, 양주잔, 소주잔, 재털이, 화장품병, 식초병, 간장병, 농약병, 꽃병, 니스병은 유리제품에서 조사하지 아니 한다).
- (5) 애자는 고압애자 (3,300V 이상) 와 저압애자 (3,300V 이하) 로 구분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단, 전기스윗치용은 제외).
- (6) 벽돌 (소성품) 은 각종 적벽돌 (赤) 을 전부 포함하여야 하며 휘장연와 (오지벽돌) 도 포함하여 조사한다.
- (7) 흙판, 스테트연통은 콘크리트관과 구분하여 조사 보고한다.
- (8) 소석회 조사시는 석회석 생산량도 동시에 조사해야 하며 석회질비료와 구분하여야 한다.

**산업중분류 37 제 1 차철강**

- (1) 철근, 환강, 환철, 평강, 각강, 반원강, 등은 모두 봉강에 포함한다. 강반성품에는 부름, 빌렛, 슬라브, 쉬트바등을 포함조사한다.
- (2) Angle (凸형강) Channel (凹형강) I - 빔은 형강에 포함한다.
- (3) 상수도관 구조관은 강관에 포함한다.
- (4) 강판은 다음의 세가지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박판 : 3mm이하

중판 : 3mm초과 6mm이하

후판 : 6 초과

- (5) 이형관 Y 등은 주철관에 포함한다,
- (6) 가단주철이라 함은 가단성(可鍛性) (취어질 수 있으나 잘부러지지 않는)이 있는 쇠를 말하며 금속관이음쇠, 방열기등을 만드는 쇠를 말한다.
- 그러므로 가단주철을 생산하며 금속관이음쇠를 만드는 경우에는 생산품목이 가단주철과 금속관이음쇠의 두가지가 되며 순수하게 출하된 것만 각각 출하량에 기입한다.
- (7) 흑철선도 마찬가지로 흑철선으로서 쇠못을 만들거나 아연을 입혀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도 가단주철과 같은 요령으로 처리한다.
- 또한 흑철선에는 경강선, 세선연선등 특수한 용도로 만든 강판 철선을 포함하며 비철금속으로된 ACSR 선(알루미늄선), 진유선등은 제외한다.
- (8) 나동선의 경우 일차제품으로 나동선을 만들어 케블선, 합성수지피복선, 면선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유의하여 자기소비량과 출하된 양을 구분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9) 동판이라 함은 95%이상 섞인 것을 말하며 90%정도는 단동, 아연과 합금인것은 황동, 주석과 합금인것은 청동이라 하는데 조사할 때 이 세가지를 구분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10) 기계용주물이라 하면 원칙적으로는 기계를 만들기 위하여 녹인쇠를 여러가지 형틀에 부어만든 제품만을 조사하여야 하며 철제 가마솥, 화로, 절구등 제외한다.
- 또한 위의 가마솥은 알루미늄 주물제품으로 조사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알루미늄 주물 제품에서는 당연히 제외 되

어야 할것이다.

- (1) 알미늄 주물제품과 프레스(압연)제품이 가끔 혼동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물제품은 알미늄피를 녹여 부어서 만든 것으로 보통 두점지만 깨지는성질의 것으로 양은솔, 두꺼운 주전자, 바게스 및 밥그릇등이며 프레스제품은 깨지기 보다는 찌그러지는 것으로 두께가 얇고 주로 노란칠을 한다 (알미늄판으로 만들).
- (2) 다음 품목등은 자가소비량이 있으니 유의하여 출하량과 별도 구분조사 한다. 선재, 나동선, 선철, 강반성품, 강판, 흑철선, 강괴.

**산업소분류 381 금속제품**

- (1) 금속제품 및 기계류 생산업체에서는 거의 주문에 의해 생산 되므로 생산품목이 월별로 달라지는 업체가 있으므로 기존조사품목외에도 조사대상 품목이 생산되면 빠짐없이 확인 조사한다.
- (2) 합마, 드라이버는 공장용수공구에 포함시키며 송곳은 제외한다.
- (3) 농업용수공구에서는 금속제만 조사되며 (삽, 괭이, 호미, 쟁기, 쇠스랑등) 쟁기에 있어서는 완제품이 아닌 경우 벗과 보습을 한쌍으로 하여 조사되어야 하며 곡괭이도 농업용수공구에 포함한다.
- (4) 석유스토브(난로)는 석유곤로와 분류되어야 하고 스토브(난로)만 조사되며 곤로는 제외한다.

단, 사업체에서 완전 겸용으로 생산된 것 (반사형과 철사망이 부착된 것)은 스토브로 포함 조사한다.

(5) 방열기 (라지에타) 중에는 콘벡타, 월, 히터 등 몇가지 종류가 있으나 모두 제외하고 순수한 라지에타 (실내 스팀용)만을 따로 조사한다.

(6) 철분과 건축용 샷슈는 단위를 \*개\*와 \*kg\*으로 병행 조사한다.

(7) 알미늄프레스제품 (식기및용기) 과 알미늄주물제품 (주물을 부어서 만든 것)은 구분 조사한다.

(8) 스테레스스틸제식기 에서는 한식기 (밥그릇, 주전자, 신선로 등)와 양식기 (폭크, 스푼, 나이프 등)를 구분하여 조사한다.

(9) 쇠못에서는 철선으로 만든것은 모두 포함시키나 나사못, 황동못, 나무못등의 특수못은 제외한다.

(10) 철사망이라 함은 철사로 망을 뜬 것을 말하며 가시철망 (유자철선철조망), 스토브망, 선풍기망, 방충망, P.V.C를 입힌 유리 대용품등은 제외한다.

(11) 볼트 및 너트제조업체에서 나오는 와샤 리벨트등은 제외한다.

(12) 낱퍼 (작크)는 단위가 사업체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으나 kg으로 조사한다. 단위환산이 곤란할 경우에는 원재료 사용량으로 환산함을 참고한다.

(13) 금고는 서류나 돈의 보관용으로 만든 대형금고만이 조사 대상이며 어린이저금통 및 임시보관용인 수제금고는 제외시킨다.

(14) 금속관 이음쇠에서는 리벨트는 제외된다.

산업소분류 382 일반기계

규격이 다양하여 가격면 공정면 소요마력등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단위 변경에 대비하여 병행 조사하여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다.

공업용 보일러 → 대 : T/H (병행조사)

발 동 기 → 대 : HP "

디 젤 기 관 → 대 : HP "

경 운 기 → 대 : HP "

선 반 → 대 : % "

압 출 기 → 대 : % "

프 레 스 기 → 대 : % "

동 력 펌 프 → 대 : HP "

공 기 압 축 기 → 대 : HP "

발 보 → 개 : % "

- (1) 공업용 보일러는 석소날 보일러와 공업용 보일러로 구분 조사하며 가정용 보일러는 제외시킨다.
- (2) 공업용 보일러, 발동기, 동력탈곡기등 기계제조업에 있어서는 특히 수리와 생산을 엄밀히 구분 조사한다.
- (3) 발동기는 석유 및 경유발동기만 조사한다.  
디젤발동기는 디젤기관(차량용 선박용 제외)에 포함 조사한다.
- (4) 디젤기관에는 농업용 디젤기관, 디젤발동기까지 포함되나 수송용(선박용디젤기관과 자동차엔진)은 분리 조사되고 있으므로 경운기 부착용 디젤엔진과 디젤발동기등은 디젤기관으로 조사한다.
- (5) 인력탈곡기 동력탈곡기는 반드시 구분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6) 분무기는 농업용 등집식 어깨거리형(배낭형) 자동 및 수동분무기와 족담형등 농업용을 조사하며 곤충(파리, 모기)을 제거하기 위한 소형분무기(가정용펌프), 페인트용, 세탁소에서 사용하는것 스프리전등은 제외한다.
- (7) 절삭공구 조사시는 공구의 명칭을 세분하여 조사 하여야 하며 쇠틸, 줄등은 공장용수공구로 조사하고 쇠틸날과 종이나 유리 혹은 목공용칼날은 제외한다.
- (8) 선반, 압축기, 프레스기는 수리품과 생산완제품을 구분 조사하고 단위는 대 와 %으로 병행 조사하며 적요란에 용도, 모양규격등을 상세히 기입토록 한다.
- (9) 중광과 샷들은 혼동되기 쉬우므로 명확히 구분하여 조사한다.
- (10) 정미기 및 정맥기에는 현미기, 제분기등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 (11) 활판인쇄기와 음쇄인쇄기를 구분하여 조사한다.
- (12) 동력펌프에는 자동식 펌프와 양수기(수리관개용)를 포함 조사하며 수동식 펌프(우물용)는 제외한다.
- (13) 재봉틀 조사시는 다이까지 포함된 완제품을 원칙으로 하나 재봉틀 두(미싱두)만 생산하드래도 완제품으로 간주 조사한다.
- (14) 발브는 건축용, 기계용, 공업용만 포함 조사하고 자동차 부속용 발브, 가이드 엔진발브, 타이어 튜브발브 및 수도꼭지는 제외된다.
- (15) 베어링은 볼베어링, 롤베어링, 스톱베어링등 전부를 포함하며 자동차용 메탈베어링, 엔진베어링, 유니버살조인트등은 제외한다.

- (16) 병행단위 품목중 발브(개, %) 및 프레스기(대, %) 등의 소형조사는 %미만 일지라도 kg으로 조사한다.
- (17) 압연기롤에서 칠드나 철판압연용롤은 조사하여야 하나 곡물분쇄용 고무롤은 제외한다.

산업소분류 383 전기기계기구

- (1) 변압기의 조사 지정단위는 KVA이며 대(臺)로 조사될 때에는 KVA로 환산하여 보고하고 수리품은 제외한다.  
송 배전용 및 기계용등 강전용(強電用) 변압기만 조사대상이 되며 계기용변압기등 약전용(弱電用)은 제외한다.
- (2) 전동기의 조사 지정단위는 HP이나 대(臺)로 조사될 때에는 해당 용량을 조사하여 환산할 것이며 수리품은 제외된다.
- (3) 합성수지절연전선 통신용케이블은 지정단위 kg으로 조사되어야 하며 기타의 단위는 환산 보고한다.  
또한 통신용케이블에서는 전력용케이블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때에는 반드시 전력용이라고 기입하여 보고한다.
- (4) 백열전구는 15W 이상의 조명용으로, 대표되는 제품의 규격을 반드시 명시한다.  
형광전구는 직관 및 환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 (5) 라디오에 있어서는 트랜지스터라디오, 진공관라디오, 카(car)라디오등을 전부 포함하여 조사하나 T/R, 진공관, 카등으로 구분하여 기입하고 수출용인 경우에는 국산원자재가 몇 % 사용되었는지를 밝힌다. 또한 최신 개발품인 디지털 크락라디오등도 조사하여야 한다.



- (6) 트랜지스터는 소형라디오가 아니며 트랜지스터용라디오등 전기제품 부속의 일종이다.
- (7) 고압축전기는 조사 지정단위가 KVA이고 저압축전기는 MF이다.
- (8) T.V수상기는 칼라TV와 흑백TV를 구분하여야 하며 그 크기(인치수)를 명시하여야 한다.
- (9) 전화기는 체신1호인 표준형 전화기 뿐만 아니라 수출용인 장식용 전화기도 조사 하여야 한다. 단 인터폰이나 무전기등은 제외된다.
- (10) 자동식 전화교환기의 조사 지정단위는 「회선」이고 수동식 전화교환기는 「대」이다.
- (11) 전기냉장고에 있어서 아이스박스나 냉동기등은 조사에서 제외된다.

산업소분류 384 수송장비 제조업

- (1) 선박용 디젤기관, 선박용 소옥기관 등의 수리품은 조사에서 제외되며 조사 지정단위는 대(臺)이나 HP를 병행하여 조사한다.
- (2) 철강화물선 목조어선 등의 수리품은 조사에서 제외되며 철강화물선과 철강어선은 별도로 구분하여 조사하며 냉동선 부선토운선 등 특수선박은 조사에서 제외한다. 단, 유조선은 철강화물선에 포함 조사한다.
- (3) 객차는 화차에 포함 한다.
- (4) 버스에 있어서 16인 미만의 차는 제외한다.
- (5) 자동차스프링은 외자(시트)용 스프링은 제외되며 차체하

부에 부착되는 스프링만을 조사하되 코일형 스프링은 이에 포함한다.

(6) 리어커링은 자전거링에서 제외한다.

#### 산업소분류 390 기타 제조업

(1) 손목시계, 패종시계, 손목시계케이스 등을 각각 구분 조사한다. 단, 탁상시계, 특수용시계(잠수기록용), 전기시계, 전자시계는 제외한다.

(2) 연필의 단위 환산: 12 자루 = 1 타(打), 12 타(打) = 1Gross = 144 자루

(3) 필타와 정돈모는 반드시 kg으로 환산 보고한다.

(4) 정돈모 조사시에는 말털은 조사하지 않는다.

(5) 인형은 천을 씌운 것만 조사한다(프라스틱인형, 목각인형, 트로피인형, 각종 알미늄인형은 조사하지 않는다).

#### 광공업생산자 판매가격조사

(1) 토사석 채굴업, 의약품, 의복제조업, 직물제품등의 조사만을 「데프레이터」 자료 수집을 위하여 계속 조사한다.

(2) 제조업의 가격조사는 지정된 단위, 품질 및 규격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3) 판매가격동락의 요인을 적요란에 꼭 기입하여야 하며 요인은 생산비(원료·임금)와 수요 및 공급, 그리고 기타의 여건등 상세하게 분석을 하여야 한다.

- (4) 판매가격 산출은 공장도출하가격을 원칙으로 하며 물품세, 유류세 등 기타 제세금을 포함시킨 가격이며 정상거래를 전제로한 가격만 조사한다.
- (5) 수출가격은 F.O.B가격을 조사하며 반드시 달라로 조사한다.

### 고용 및 급여

- (1) 임시 종업원란은 없어졌으니 생산종업원, 사무 및 기타로 구분하여 기입토록 할 것.  
또한 자영업주나 무급가족종사자 기입에 착오없도록 할 것.
- (2) 연근무인원수는 일일종업원수의 누계인데 일반적으로 월말 종업원 수에다가 조업일수를 곱해주고 있는데 이는 편법이므로 인사 및 경리취급 담당에게 구체적으로 협조를 구하여 실제 연근무인원수를 조사토록 한다.
- (3) 고용 및 급여액에 차가 있을 경우 변동요인을 비교란에 기입하는데 추석보너스, 김장보너스, 기별보너스, 정기급여인상, 농활급 지급등을 기입한다.

## 광공업 동태조사 지정 품목분류

## 2. 광공업동태조사 지정 품목분류

- (1) 이 분류표에는 조사 대상이 되는 품목을 산업소분류별로 게재하고 있다.
- (2) 이 분류표의 단위란에 두 가지 단위( )로 기입된 품목은 반드시 두가지 단위에 따라서 병행 조사 보고해야 한다.
- (3) 그 사업체가 소속하는 산업소분류의 대상 품목 전부를 검토하여 그 사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중 해당되는 품목을 골라야 한다.
- (4) 그 사업체의 주요 제품을 이 분류표에서 발견하지 못하거나 (중전과는 다른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체에서 이런 경우가 많음) 또는 이 분류표상의 어느 품목에 해당하는가가 불분명할 때에는 그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명칭대로 기입하되 그 명칭은 구체적으로 기입하여야 한다.  
(예 : 가정용 전기세탁기라 기입하는것은 좋으나 이를 가정용 전기 기계와 같이 기입하는 것은 너무 막연하다.)
- (5) 두 개 이상의 품목을 한란에 결합하여 기입하여서는 안된다. (예 : 간장과 된장을 생산하는 경우라면 이들을 각각 한란에 기입한다. 「간장 및 된장」이라 하여 한란에 기입하면 안 된다.)
- (6) 이 분류표의 단위란에 사용된 약호는 다음과 같다.

g :그램 (gram)

Kg :킬로그램 (=1,000g)

Mt :메트릭톤 (=1,000Kg)

S/T :쇼트톤 (=907Kg)

HP :마력

G/A : 개론 (gallon)

m : 미터 (meter)

m<sup>2</sup> : 평방미터 (가로와 세로가 각 1 m 인 넓이)

m<sup>3</sup> : 입방미터 (가로, 세로, 높이, 각각 1 m 인 부피)

S/F : 스퀘어 휘트 (Square feet)

ℓ : 리터 (liter)

Kℓ : 킬로리터 (=1,000ℓ)

G/T : 그로스톤 (용적톤 100m<sup>2</sup> 피드 = G/T)

KVA : 키로볼트암페어 (Kilo Volt Ampere)

가. 공업동태조사지정품목분류표

품목 번호	지정 품목명	단위	품목 번호	지정 품목명	단위
중분류 21. 석탄 광업			2904101	석 회 석	%
210. 석 탄 광업			2904201	고 령 토	"
2101001	무 연 탄	%	2904501	납 석	"
중분류 23. 금속 광업			2909101	인 상 흑 연	"
230. 금속 광업			2909102	토 상 흑 연	"
2301001	철 광 석	%	2909201	활 석 광 석	"
2302101	중 석 광 석	S/T	2909301	형 석 광 석	"
2302301	금 광 석	g	중분류 31.음·식료품및 담배제조업		
2302302	은 광 석	"	311-312.식료품 제조업		
2302401	동 광 석	%	3112901	분 유 및 연 유	kg
2302501	연 광 석	"	3114101	물고기및해산물통조림	kg
2302502	아 연 광 석	"	3114201	냉 동 해 산 물	"
2302901	물 리 브 례 례 광 석	kg	3115301	마 아 가 린	"
중분류 29.비금속 광업			3116201	밀 가 루	%
290. 비 금 속 광 업			3117101	식 빵	kg
2901001	토 사 석 류 (금액조사)	천원	3117201	비 스 키 트	"

품목 번호	지정 품목명	단위	품목 번호	지정 품목명	단위
3117202	전 빵	kg	3131201	소 주	kl
3117301	라 면	"	3133001	맥 주	"
3118101	정 당	kg	3135101	탁 주	"
3118201	엿 (물엿포함)	kg	3135201	청 주	"
3118301	식용포도당	"	3136101	누룩(곡자)	kg
3119001	설탕과자	"	3136201	엿기름(맥아)	"
3119002	점	"	3137001	사이다	kl
3121101	인조얼음	kg	3137002	콜라	"
3121201	간장	kl	314. 담배제조업		
3121202	된장	kg	3140001	필타달린담배	천본
3121301	글루타민산소다	kg	3140002	필타없는담배	"
3121302	인공감미료	"	3140003	자연	kg
3121401	녹말가루(전분)	kg	중분류 32. 섬유·의복 및 가죽공업		
3121901	이스트	kg	321. 섬유제조업		
3122001	사료	kg	3212001	직물제품(의복류제외) (금액조사)	천원
313. 음료품제조업			3213101	화섬사양말	천족
3131101	주정	kl	3213401	메리야스와의	매



품 목 번 호	지 정 품 목 명	단 위	품 목 번 호	지 정 품 목 명	단 위
3213901	타 울	매 ㎡	3217201	순 본 건 직 물	㎡
3215101	로 오 프	kg	3217202	견 혼 방 직 물	〃
3215201	어 망	〃	3217301	순 소 모 직 물	〃
3216101	면 사	〃	3207302	순 방 모 직 물	〃
3216201	순 소 모 사	〃	3217303	모 혼 방 직 물	〃
3216202	순 방 모 사	〃	3217601	재생섬유직물(스포츠직물 및 인적직물포함)	〃
3216203	혼 방 소 모 사	〃	3217602	순 합 성 섬 유 직 물	〃
3216301	아 마 사	〃	3217603	혼 방 합 성 섬 유 직 물	〃
3216401	합 성 섬 유 방 적 사	〃	3219001	갈 포 벽 지	〃
3216402	재 생 섬 유 방 적 사 (스 프사및비스코스인견사 포함)	〃	322. 의 부 제 조 업		
3216403	아 세 테 이 트 사	〃	3220001	의 부 류 (금 액 조 사)	천 원
3216404	혼 방 합 성 섬 유 방 적 사	〃	323. 가 족 , 가 족 대 용 품 및 털 가 족 제 품		
3216501	생 사	〃	3231001	소 가 족	㎡
3216502	견 방 사	kg	3233101	기 계 용 가 족 벨 트	m/ply
3216601	어 망 사	〃	3233201	비 닐 제 트 링 크 (가 족 제 포 함)	개
3216602	화 학 섬 유 연 사	〃	3233202	핸 드 백	〃
3217101	면 직 물	㎡			

품목 번호	지정 품목명	단위	품목 번호	지정 품목명	단위
324. 가죽신 제조업			3320201	장 지 문	개
3240001	남 자 용 가 죽 신	족	중분류 34. 종이, 종이제품 및 인쇄출판업		
3240002	여 자 용 가 죽 신	"	341.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3240003	군화 및 가죽장화	"	3411201	신 문 용 지	㎡
중분류 33. 제재업, 나무 제품 및 가구 제조업			3411202	백 상 지	"
331. 제재 톨크 및 나무 제품 제조업			3411203	인쇄용지 및 필기용지	"
3311101	각 재	㎡	3411204	크 라 프 트 지	"
3311102	판 재	"	3411205	아 트 지	kg
3311201	합 판	"	3411206	박 엽 지	"
3311301	하 드 보 오 드	"	3411207	권 연 지	"
332. 가구 및 전구 제조업			3411301	판 지	㎡
3320101	잠 농 (찬장포함)	개	3411302	골 판 지 원 지	"
3320102	경 대	"	3411401	창 호 지	{ 권 (2000매)
3320103	목 제 책 상	"	3411402	장 판 지	㎡
3320104	목 제 식 상	"	3412101	크 라 프 트 지 대	매
3320105	목 제 외 자	"	3412301	골 판 지 상 자	{ 개 ㎡
			3419301	은 박 지	kg

품목 번호	지정 품목명	단위	품목 번호	지정 품목명	단위
342. 인쇄 출판 및 관련업			3511401	호 르 말 린	%
3420101	일 간 신 문	천부	3511701	염 로	kg
3420102	비 일 간 신 문	"	3511801	카 바 이 드	%
3420201	교 과 서 및 서 적	권	3512101	요 소 비 료	"
3420301	잡 지 및 정 기 간 형 물	"	3512102	석 회 질 소 비 료	"
3420401	일 반 인 쇄 물	연	3512103	용 성 인 비	"
중분류 35. 화학, 석유, 석탄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3512201	복 합 비 료	"
351. 공업용 화학제품 제조업			3512601	살 충 제	kg
3511101	황 산 (유 산 : 98% 환산)	%	3512602	살 균 제	kg
3511102	염 산 (35% 환산)	"	3513101	요 소 수 지	"
3511103	가 성 소 다 (100% 환산)	"	3513102	P. V. C	%
3511104	소 다 회	"	352.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3511105	암 모 니 아	"	3521101	페 인 트	l
3511201	압 축 산 소	m <sup>3</sup>	3521102	와 니 스	"
3511202	아 세 틸 렌 개 스	kg	3521103	에 나 멜	"
3511301	B. T. X	kl	3521104	락 카	"
			3522001	외 약 품 (금 액 조 사)	천 원
			3523101	화 장 비 누	kg

품 목 번호	지 정 품 목 명	단 위	품 목 번호	지 정 품 목 명	단 위
3523102	세 탁 비 누	kg	3530106	중 유	ℓ
3523201	세 탁 용 합 성 세 제	"	3530107	방 카 C 유	"
3523301	향 료	"	3530108	등 유	"
3523302	화 장 수	"	3530201	운 활 유	"
3523303	화 장 크 림	"	354. 석유 및 석탄의 잡제품		
3523304	화 장 백 분	"	제조업		
3523305	머 릿 기 림	"	3540101	각 종 연 탄	%
3523306	연 치 약 및 치 분	"	3540201	루 핑 지	kg
3523307	글 리 세 린	"	3540202	아 스 팔 트	%
3529201	다 이 나 마 이 트	"	355. 고무제품 제조업		
3529202	도 화 선	m	3551101	자 동 차 용 타 이 어	본
3529203	뇌 관 개	개	3551102	자 동 차 용 튜 우 브	"
3529301	성 냥	천 갑	3551103	자 전 거 용 타 이 어	"
3529401	카 본 블 락	kg	3551201	재 생 타 이 어	"
3529402	활 성 탄 소	"	3559101	고 무 신	족
3529701	인 쇄 용 잉 크	"	3559102	고 무 장 화 및 우 화	"
353. 석유 정제업			3559103	운 동 화	"
3530101	액 화 석 유 개 스 (L.P.G)	ℓ	3559201	각 종 고 무 벨 트	ply
3530102	휘 발 유	"	3559202	고 무 호 오 스	m
3530103	나 프 사	"	3559901	스 폰 지	㎡
3530104	항 공 유	"	356. 기타 플라스틱제품		
3530105	경 유	"	제조업		
			3560001	플 라 스틱 제 품	%

품목 번호	지정품목명	단위	품목 번호	지정품목명	단위
중분류 36.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업			3692201	소 석 회	㎏
361. 도자기 및 점토 제품 제조업			3699101	콘크리트 전주	본
			3699102	흙 관	㎡
3610101	도 자 식 기	개	3699201	콘크리트 벽돌	매
3610201	교 압 애 자	㎡	3699202	콘크리트블럭	㎡
3610202	저 압 애 자	㎡	3699203	콘크리트 기와	㎡
362. 유리 및 유리 제품 제조업			3699204	콘크리트 판	본
			3699205	석 면슬레이트	㎡
3620101	판 유 리	상자	중분류 37. 제 1차 금속 제조업		
3620201	유 리 술 병	개	371. 제 1차 철강 제조업		
3620202	유 리 식 기	㎡			
3620203	유 리 약 병	㎡			
369. 기타 광물제품 제조업			3710101	선 철	㎏
			3710102	강 피	㎡
3691101	벽 돌(소성품)	매	3710103	강 반성품	㎡
3691301	타 일	㎡	3710201	형 강	㎡
3691401	내 화 석 돌	㎏	3710202	봉 강	㎡
3692101	포오트 렌드시멘트	㎡	3710203	선 재	㎡
3692102	백 시 멘 트	㎡	3710204	강 판	㎡

품목 번호	지정품목명	단위	품목 번호	지정품목명	단위
3710205	강 판	%	381. 금속제품 제조업		
3710301	주철 판	"	3811201	공장용 수공구	개
3710302	가단주철	"	3811301	농기구 (경작용도구)	개
3710303	기계용주물	"	3812001	철제책상	"
3710901	아연도철판	"	3812002	철제의자	"
3710902	석도철판	"	3812003	철제캐비네트	"
372. 제1차 비철금속 제조업			3813001	건축용 샷슈	{ 개 kg
3720101	곰피	kg	3813002	철제수문 및 문	개
3720102	은피	"	3819101	드림판	"
3720103	전기동	"	3819102	통조림판	"
3720104	연피	"	3819201	알루미늄 프레스 가공식기 및 용기	kg
3720105	아연피	"	3819301	스테인레스스틸제식기	"
3720201	구리판 및 판	"	3819401	흑철선	%
3720202	알루미늄판	"	3819402	나동선	kg
3720301	알루미늄주물제품	"	3819501	쇠못	"
중분류 38. 금속제품, 기계, 전기기기 및 수송장비 제조업			3819502	와이어로오프	"
			3819503	철사망 (철사그물)	"
			3819504	용접봉	"
			3819601	볼트 및 너트	"

품 번	목 호	지 정 품 목 명	단 위	품 번	목 호	지 정 품 목 명	단 위
3819602		금속판 이음쇠	kg	3823401		절삭공구	개
3819603		작크(지퍼)	"	3824201		연사기	대
3819701		방열기	대	3824202		면직기	"
3819702		석유스토브	개	3824203		견직기	"
3819901		금고	"	3824204		환편직기	"
3819902		라이타	"	3824205		횡편직기	"
382.일반기계 제조업				3824206		종광	개
3821101		발동기	{ 대 HP	3824207		샷틀	대
3821102		디젤기관 (선박및차량용제외)	{ 대 HP	3824301		정미기	대
3821103		보일러(가정용제외)	{ 대 1/h	3824302		정맥기	대
3822001		인력탈곡기	대	3824901		활판인쇄기	"
3822002		동력탈곡기	"	3824902		연탄제조기	"
3822003		분무기	"	3829101		동력펌프(양수기)	{ 대 HP
3822004		경운기	{ 대 (HP)	3829102		공기압축기	{ 대 HP
3823101		천반	{ 대 (%)	3829401		재봉틀	대
3823201		압출기	{ 대 (%)	3829901		발브	{ 개 %
3823202		프레스기	{ 대 (%)	3829902		베아링	kg
3823301		압연기롤	%				

품 번	목 호	지 정 품 목 명	단 위	품 번	목 호	지 정 품 목 명	단 위
383.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3832902		콘    빈    서 (전 력용제 외)	개
				3832903		저    항    기(통신용)	"
3831101		전    동    기	HP	3832904		기    역    소    자	"
3831201		변    압    기	KVA	3832905		마크네틱 헤더	"
3831901		고    압    축    전    기	"	3832906		헤            더	"
3831902		저    압    축    전    기	MF	3833001		전    기    병    장    고	대
3831903		정    류    기	대	3833002		선            풍    기	"
3832101		라   디   오   수   신   기	"	3833003		적   산   전   력   계	"
3832102		T. V. 수   상   기	"	3833004		에어 콘디 쇼너	"
3832201		녹    음    기	"	3839101		합성수지절연 전선	kg
3832301		레    코    드    판	매	3839102		통신및전력용케이블	kg
3832401		전    화    기	대	3839201		백    열    전    구	개
3832402		자동식전화교환기	회선	3839202		형    광    전    구	"
3832403		수동식전화교환기	대	3839301		축    전    지	"
3832404		다    이    오    드	개	3839401		전    전    지	"
3832405		IC (집적 회로)	"	3839901		소    키    트	"
3832406		트    랜    지    스    터	천개	384.수송장비 제조업			
3832901		확    성    기	개	3841101		선박용 디젤기관	대 HP



품목 번호	지정품 목명	단위	품목 번호	지정품 목명	단위
3841102	선박용소옥디젤기관	대 HP	3853001	손목시계	개
3841201	철강화물선	G/T	3853002	벽시계(패종)	"
3841202	철강어선	"	3853003	손목시계 케이스	"
3841301	목조어선	"	중분류 39. 기타 제조업		
3842101	화차	량	390. 기타 제조업		
3843101	버스	대	3902001	피아노	대
3843102	승용차	"	3902002	울겔	"
3843103	트럭	"	3909101	나전칠기제 공예품	개
3843104	삼륜화물차	"	3909201	연필	타
3843201	자동차용내연기관 (엔진)	대 HP	3909202	볼펜	개
3843202	자동차용스프링	개	3909203	만년필	개
3843203	" 피스톤	"	3909301	철제우산및양산살대	"
3844101	차전거차체	대	3909401	정돈모	kg
3844102	차전거링	개	3909501	가발	개
3844201	모터싸이클	대	3909502	인조눈섭	"
	385. 과학제측 및 조 정용 기기 제조업		3909801	인형	"
3852201	안경테	개	3909901	필타	kg
			410. 전기업		
			4101001	총발전량	천KWH

나. 지정 원재료 분류표

산 업 분 류	원 재 료 명
대분류 2 광 업	566 경목 (cm) 612 폭약 (kg)
대분류 3 제 조 업	
중분류 31 음식료품및 담배	
소분류 311~312 식 료 품	
세분류 3112 낙농제품제조업	529 생우유 (kg) 534 설탕 (kg)
" 3114 해산물통조림및가공업	538 어개류 (%)
" 3115 동식물기름제조업	530 우 지 (kg) 531 경화유 (kg)
" 3116 도정 및제분업	524 소 맥 (%)
" 3117 빵제품제조업	528 소맥분 (%) 534 설탕 (kg)
" 3118 제 당 업	533 원 당 (%) 524 소맥 (%) 526 옥수수 (%)
" 3119 설탕과자제조업	528 소맥분 (%) 534 설탕 (kg)
" 3121 기타식료품제조업	524 소 맥 (%) 526 옥수수 (%) 525 대두 (%)
" 3122 배합동물사료제조업	536 소맥피 (%) 537 탈지강 (%) 526 옥수수
소분류 313 음 료 품	
세분류 3131 증류술및합성술제조업	527 고구마 (%) 535 당 밀 (%) 539 주정 (kg)
" 3133 맥주제조업	523 대 맥 (%) 541 호프 (kg) 540 맥 아 (%)
" 3135 기타양조주제조업	528 소맥분 (%) 526 옥수수 (분) (%) 539 주정
" 3136 누룩제조업	523 대맥 (%) 524 소맥 (%)
" 3137 청량음료수제조업	582 탄산가스 (kg) 534 설탕 (kg)
소분류 314 담배 제조업	542 잎담배 (%) 659 필 타 (%)
중분류 32 섬유, 의복및가죽공업	
소분류 321 섬유제조업	
세분류 3212 직물제품제조업	558 편직물 (m) 559 소모직물 (m) 560 방모직물

품      무      번      호      및      단      위

527 고구마 (%)

527 고구마 (%) 535 당밀 (%) 534 설탕 (kg)  
(분) (%), 525 대두 (박) (%)

(kg)

(m<sup>3</sup>) 561 화섬직물 (m<sup>2</sup>) 562 혼방직물 (m<sup>2</sup>)

산 업 분 류	원 재 료 명
세분류 3213 편 직 업	552 면 사 (kg) 553 소모사 (kg) 554 방모사 (kg)
" 3215 로오프밋어당제조업	550 아바카 (kg) 552 면 사 (kg) 556 화학섬유사
" 3216 방적업밋제사업	543 원 면 (kg) 544 S 면 (kg) 545 지부양모 (kg)
	555 화학섬유 ( 톱 . 실 . 화이버 ) (kg) 556
	594 카프로락담 (kg) 607 폴리에치렌 (kg)
" 3217 직 물 제 조업	552 면사 (kg) 553 소모사 (kg) 554 방모사 (kg)
" 3219 기타직물제조업	551 갈 저 (kg) 552 면 사 (kg)
소분류 322 의복제조업	558 면직물 ( m <sup>2</sup> ) 559 소모직물 ( m <sup>2</sup> )
소분류 323 가죽, 가죽대용품및털가죽제조업	563 원피 ( m <sup>2</sup> ) 564 우혁 ( m <sup>2</sup> )
소분류 324 가죽신 제조업	564 우혁 ( m <sup>2</sup> )
중분류 33 제재, 나무제품 및 가구제조업	
소분류 331 제재목및 나무제품 제조업	565 원목 ( m <sup>3</sup> ) 585 메타늘 ( kg )
소분류 332 가구및 건구제조업	565 원목 ( m <sup>3</sup> )
중분류 34 종이, 종이제품및인쇄출판업	
소분류 341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세분류 3411 팔프, 종이및판지제조업	565 원목 ( m <sup>3</sup> ) 567 쇄목팔프 ( % )
	518 팔석분 ( % )
3412 종이, 판지용기및상지제조업	569 고지 ( % ) 573 크라프트지 ( % )
3419 기타의 종이제품 제조업	571 백상지 ( % ) 572 인쇄용지 ( % )
소분류 342 인쇄출판 및 관련업	570 신문용지 ( % ) 571 백상지 ( % )
중분류 35 화학, 석유, 석탄, 고무및프라스틱	

품	목	번	호	및	단	위								
556	화학섬유사	(kg)												
(kg)	607	폴리에치렌	(kg)	608	폴리프로피렌	(kg)								
546	세척양모	(kg)	547	양모듬	(kg)	548	잠견	(kg)	549	아마	(kg)	552	면사	(kg)
	화학섬유사	(kg)	588	AN	모노마	(kg)	589	에치렌	그리콜	(kg)	590	DMT	(kg)	
	608	폴리프로피렌	(kg)	568	화학펄프	(%)								
	555	화학섬유	(	특설	화이버)	(kg)	556	화학섬유사	(kg)	557	생사	(kg)		
560	방모직물	( m <sup>2</sup> )	561	화섬직물	( m <sup>2</sup> )	562	혼방직물	( m <sup>2</sup> )						
586	호르마린	( kg )												
568	화학팔프	( % )	569	고지	( % )	579	가성소다	( kg )	599	유산반토	( kg )			
575	관지	( % )												
576	박엽지	( kg )	651	알미늄박	( kg )									
572	인쇄용지	( % )	574	아트지	( kg )	576	박엽지	( kg )	614	인쇄잉크	( kg )			

산 업 분 류	원 계 료 명
소분류 351 공업용화학제품 제조업 세분류 3511 공업용기본화학제품제조업 3512 비로밧 농약 제조업 3512 비로밧 농약 제조업 3513 합성수지, 플라스틱제품 및 인조섬 제조업	510 유황 (kg) 511 공업염 (kg) 580 암모니아 (kg) 581 소다회 (kg) 617 낱사 (kg) 619 코크스 (kg) 509 인광석 (kg) 510 유황 (kg) 584 키시멘 (kg) 617 낱사 (kg) 587 VCM (kg) 586 호르마린 (kg)
소분류 352 기타화학제품 제조업 세분류 3521 페인트 와니스밧 약카 제조업 3522 의약품 제조업 3523 비누, 세정제, 향료, 향장료및기타토티렛제조업 3529 기타화학 제품제조업	591 스키렌도노마 (kg) 615 지방산 (kg) 583 벤젠 (kg) 577 황산 (kg) 578 염산 (kg) 603 그리세린 (kg) 605 요소 (kg) 530 우지 (kg) 577 황산 (kg) 600 규산스다 (kg) 603 그리세린 (kg) 577 황산 (kg) 578 염산 (kg) 597 산화티탄 (kg) 603 그리세린 (kg)
소분류 353 석유정제업 " 354 석유및석탄의잡제품 " 355 고무제품제조업 " 356 기타플라스틱제품제조업	616 원유 (kg) 501 무연탄 (kg) 620 생고무 (kg) 621 합성고무 (kg) 556 화학삼유사 613 카본블랙 (kg) 607 폴리에치렌 (kg) 608 폴리프로피렌 (kg)
중분류 36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소분류 361 도자기 및점토제품제조업 " 362 유리및유리제품제조업 " 369 기타광물제품제조업	507 점토 (kg) 513 고평토 (kg) 514 장석 (kg) 501 소라회 (kg) 512 석회석 (kg) 514 장석 (kg) 507 점토 (kg) 512 석회석 (kg) 513 고평토 (kg) 521 석면 (kg) 568 화학펄프 (kg) 624 시멘트

품 목 번 호 및 단 위

512 석회석 (kg) . 577 황산 (kg) . 578 염산 (kg) . 579 가성소다 (kg)  
 583 벤젠 (kg) . 585 메타놀 (kg) . 586 호르마린 (kg) . 605 요소 (kg)  
 623 생석회 (kg)  
 577 황산 (kg) 578 염산 (kg) 579 가성소다 (kg) 583 벤젠 (kg)  
 605 요소 (kg)

593 무수프탈산 (kg) 596 아연화 (kg) 597 산화탄산 (kg) 603 그리세린 (kg)  
 584 키시렌 (kg) 532 아마인유 (kg)  
 579 가성소다 (kg) 580 암모니아 (kg) 581 소다회 (kg) 585 메타놀 (kg)  
 534 설탕 (kg) 539 주정 (에타놀) (kg)  
 578 염산 (kg) 579 가성소다 (kg) 581 소다회 (kg) 592 알킬벤젠 (kg)  
 604 스테아린산 (kg) 611 향료 (kg) 615 지방산 (kg)  
 591 스티렌모노마 (kg) 593 무수프탈산 (kg) 596 아연화 (kg)  
 615 지방산 (kg) 595 염료 (kg) 532 아마인유 (kg)

(타이어 코드사)(kg) 552 면사 (면사포)(kg) 596 아연화 (kg) 597 산화티탄 (kg)

609 폴리스티렌 (kg) 610 P.V.C (kg) 590 DOP (kg)

515 규사및규석 (%) 522 석고 (%)  
 515 규사및규석 (%) 520 초석 (%) 519 형석 (%) 622 파유리 (%)  
 514 장석 (%) 515 규사및규석 (%) 516 납석 (%) 519 형석 (%) 522 석고 (%)  
 (%) 508 모래 (m) 630 봉강 (%) 648 철선 (kg)

산 업 분 류	원 계 료 명
중분류 37 제 1 차철강제조업 소분류 371 제 1 차철강제조업 " 372 제 1 차비철강제조업	502철강석(%) 503 망강광석(%) 625 선철 632중후판(%) 633 박판(%) 636 주물(%) 504 동광석(%) 505 연광석(%) 506아연광석 643 알미늄피(kg) 512 석회석(%) 619 코크스
중분류 38 금속제품·기계·전기기기 및 수송장 제조업 소분류 381 금속제품제조업 소분류 382 일반기계제조업	625 선철(%) 626 고철(%) 627 강괴(%) 628 631 선재(와이어로프)(%) 632중후판(%) 636주물(%) 637 스테레스판(kg) 638 특수강 643알미늄피(kg) 644 알미늄판(kg) 645동판 651알미늄박(kg) 619 코크스(%)
소분류 383 전기기계기구제조업	625 선철(%) 626 고철(%) 627 강괴(%) 631 선재(%) 632 중후판(%) 633 박판(%) 638 특수강(kg) 639 전기동(kg) 640 동실(kg) 645 동판(kg) 646 인칭동판(kg) 647 황동(kg) 653 집적회로(IC)(개) 654브라운판(개) 610 P.V.C(%)
소분류 384 수송장비제조업	625 선철(%) 626 고철(%) 627 강괴(%) 631 선재(%) 632 중후판(%) 633 박판(%) 639 전기동(kg) 641 연괴(kg) 648 철선(kg) 649 동선(kg) 650용접봉(kg)
소분류 385 과학계측및 조정용기기	633 박판(%) 637 스테레스판(kg)
중분류 39 기타 제조업	517 흑연(kg) 552 면사(kg) 610 P.V.C(kg) 633 박판(%) 635강판(%) 660 인모(kg)
대분류 4 전 기 업	501 무연탄(%) 618 B - C 유(kg)





다. 생산자 판매가격조사 지정품목일람표

품목번호	품목명	단위	품질 및 규격
290. 토사석채굴업			
290-01	대 리 석	m <sup>3</sup>	10.89 자 ( 1 자 = 1 자사방 ) 24mm 황용
290-02	결 치 석	평	1 자 x 1 자 x 1.5 자 36 개
290-03	자 갈	m <sup>3</sup>	취석 50mm ~ 25m/m
321. 직물제품			
321-02	천	개	개인천막 1.46m x 1.64m 완전방수
321-02	시 트	개	크기 중 (20m x 40m)
321. 의복제조업			
322-01	등 양 복	착	순수모부지 사용 (제일모직 보통 제품 사용)
321-02	하 양 복	"	모혼방부지 사용 (메드론 60 ~ 62%, 모 38 ~ 40%, 제일모직 제품)
322-03	와 이 셔 쓰 매		P.P. 와야셔쓰 백색 15", 긴소매, 폴리에스터 65%, 면 35%
322-04	남 자 용 학생 복	착	면, 흑색 5호 (중고교생용)
322-05	남 방 셔 쓰 매		폴리에스터 65%, 면 35% 크기 중 중급품
352. 의 약 품			
352-01	신 경 계 용 약	100T	트란키라이자 정당 100 mg
352-02	해 열 진 통 제	1000T	아스피린 (성분함량 정당 500 mg)
352-03	전 위 소 화 제	1000T	원기소, 그로민정, 비타이스트
352-04	총 합 비 타 민 정	100T	비타민 A 10,000 IU 비타민 B 2,000 IU 포함)
352-05	자 양 강 장 변 질 제	10병	드링크류, 병당 100 mg
352-06	오 일 페 니 시 린 주	병	병당 100 cc 300만 단위

## 금액조사를 실시하는 산업

### 3. 금액조사를 실시하는 산업 /

다음의 산업소분류 혹은 세분류는 당원의 광공업 동태조사중 금액 조사하는 부분으로서 동분류 해당 사업체의 신규 매출에 사용토록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발췌한 것이다.

세분류 2901 토사석 채굴업
------------------

점토(흙), 모래, 자갈, 석재, 화강암, 대리석, 사암, 전탄암 등의 토사석을 채취, 채굴에 주로 종사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고령토와 같이 요업원료로서 사용되는 토사석류는 2904(요업원료광물광업)으로 신설 분류한다.

#### 29011. 암석 채굴업

화강암, 대리석, 천연슬레이트, 기타의 암석(화강암, 반현암, 견치석, 현무암, 모랫돌, 간석등), 석재용의 암석채굴에 주로 종사하는 사업을 말한다.

#### 29012. 토사석 채굴업

점토(흙), 모래, 자갈등의 채굴에 주로 종사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점토(흙), 모래, 자갈 채취업

× 고령토 채굴업(2904)

세분류 3212 직물제품제조업(의류제외)
------------------------

직물을 짜지 않고 구입한 각종 직물로서 의복을 제외한 직물 제품제조에 주로 종사하는 사업을 말한다.

32121. 직물 가방 제조업

구입한 각종 직물을 원재료로 하여 직물 가방 제조에 주로 종사하는 사업을 말한다.

- 포제 가방 및 배낭, 학생용 가방 (플라스틱제 제외)
- × 가죽 가방 제조업 (32332)

32129. 기타의 직물 제품 제조업

구입한 직물, 편직물을 사용하여 커튼, 시트, 나프킨, 테이블커버, 침대 커버, 세탁대, 의자커버, 직물대, 천막, 트리밍, 자수품류, 페넨트(기) 등의 제조에 주로 종사하는 사업을 말한다.

소분류 322 의복 제조업

세분류 3220 의복 제조업

구입한 각종 직물과 가죽, 털가죽, 기타 재료를 재봉하여 신, 의복, 잠갑, 모자 및 기타의 각종 직물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하며 단지 편직 공장에서 일관 작업으로 내의, 잠갑, 양말 등의 의복을 제조하는 사업은 3213(편직업)에 분류한다. 각종 모자 및 방수외투 등을 제조하는 사업도 여기에 분류한다.

의복의 수선업은 9520(세탁 및 염색서비스업)으로 분류한다.

32201. 남자용 의의 제조업

재료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성인과 소년용 의의를 제조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 양복(남자), 제복, 작업복, 오버코트, 잠바, 운동복, 위생복, 남방

샤스, 와이샤스 기타의 남자용 의의.

32202. 여자용 의의 제조업

재료의 종류와 형태를 가리지 않고 부인과 소녀용 의의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부인용 스카트, 여자용 바지, 브라우스, 웨딩드레스, 바바리코트, 오버코트, 위생복, 치마, 저고리, 기타 여자용 한복.

32203. 소아용 의의 제조업

재료와 형태를 가리지 않고 소아용 의의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아동복, 소아용 의투 등 제조업

32204. 내의 제조업

재료와 형태를 가리지 않고 내의 제조에 주로 종사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 남자용 내의 (메리야스제 제외) 여자용 내의 (메리야스제 제외) 파자마, 까운류 (속옷).
- X 메리야스제 내의 제조업 (32133)

32206. 비옷 및 기타 방수용 의의 제조업

재료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비옷 및 기타 방수용 의의 제조에 주로 종사하는 사업을 말한다.

- 비옷, 잠수복, 비닐비옷 기타 각종 우의

32207. 모자 제조업 (일관작업에 의한 펠트모자 제외)

펠트지를 포함한 각종 원료로 모자류 제조에 주로 종사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일관작업에 의한 동일작업장에서의 펠트모자 제조업은 32190(달리 분류되지 않은 직물 제품 제조업)에 분류한다.

파나마모자, 밀짚모자, 학사모자, 펠트모자, 철모, 비닐모자(단 펠트모자에 있어서는 일관 작업에 의하여 편조된 것은 제외한다).  
X 펠트모자 제조업(일관작업인 것) 32190 메리야스제 모자(32134)

32209. 기타 직물 장신품 제조업

재료와 형태를 가리지 않고 기타의 장신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넥타이, 칼러, 머플러, 부라자, 장신용 벨트, 손수건, 버선, 바지멜방, 양말대님, 머리망 등의 제조에 주로 종사하는 사업을 말한다.

X 가죽제 벨트(32339)

세분류 3522 의약품 제조업

35220. 의약품 제조업

사람 및 가축 치료 사용을 위한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의 약전, 혈청 및 유사제품등의 생산과 유기 및 무기 화학의 유도체 제조와 식물의 약품 및 약용품의 가공, 그리고 사람 또는 가축 치료의 사용을 위한 약품 배합에 있어 약품을 제조 또는 가공에 주로 종사하는 사업을 말하며 종래에는 몇가지 종류(예를 들면 신경계용약, 해열 진통제, 호흡기계용약, 소화기계용약 등)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나 개편 광공업 동태조사시에는 종류에 구분없이 해당 사업체의 총출하액 및 재고액을 월별로 조사 파악토록 한다.

## 도량형 단위환산표



도량형 단위환산표

<표 1> 길 이

	寸	尺	m	in	ft	yd
1 치 (寸)	1	0.1	0.03030	1.1930	0.09941	0.03313
1 자 (尺)	10	1	0.30303	11.930	0.99419	0.33139
1 매터 (m)	33	3.3	1	39.370	3.2808	1.0936
1 인치 (in)	0.8382	0.08382	0.0254	1	0.08333	0.02777
1 휘트 (ft)	10058	1.0058	0.3048	12	1	0.33333
1 야드 (yd)	30175	3.0175	0.9144	36	3	1

<표 2> 넓 이

	平方尺	坪	m <sup>2</sup>	in <sup>2</sup>	ft <sup>2</sup>	yd <sup>2</sup>
1 제곱자 (平方尺)	1	0.02777	0.09182	142.33	0.98842	0.10982
1 평 (坪)	36	1	3.3057	5123.9	35.583	3.9536
1 제곱매터 (m <sup>2</sup> )	10.89	0.3025	1	1550.0	10.763	1.1959
1 제곱인치 (in <sup>2</sup> )	0.007025	0.001951	0.0006451	1	0.006944	0.0007716
1 제곱휘트 (ft <sup>2</sup> )	1.0117	0.02810	0.09290	144	1	0.11111
1 제곱야드 (yd <sup>2</sup> )	9.1054	0.25292	0.83612	1296	9	1

<표 3> 부 피

	合	升	m <sup>3</sup>	ℓ	英 gallon	美 gallon
1 홉 (合)	1	0.1	0.0001803	0.18039	0.03968	0.04765
1 되 (升)	10	1	0.001803	1.8039	0.39681	0.47654
1 세제곱미터 (m <sup>3</sup> )	5543.5	554.35	1	1000	219.97	264.27
1 리터 (ℓ)	5.5435	0.55435	0.001	1	0.21997	0.26417
1 갈론 (gallon 英)	25206	25206	0.004545	4.5459	1	1.2009
1 갈론 (gallon 美)	20984	20984	0.003854	3.7854	0.83270	1

<표 4> 무 계

	貫	斤	kg	℥	英 ton	美 ton	oz	L/B
1 관 (貫)		6.25	3.75	0.00375	0.003690	0.004133	132.27	82.671
1 근 (斤)	0.16	1	0.6	0.0006	0.00059051	0.0006613	21.164	1.3227
1 킬로그램 (kg)	0.26666	1.6666	1	0.001	0.0009841	0.001102	35.273	2.2045
1 메트릭톤 (℥)	266.666	1666.6	1000	1	0.98418	1.1022	35273	2204.5
1 롱톤 (L/T 英)	270.95	1693.4	1016	1.0160	1	1.12	35,840	2240
1 숏톤 (S/T 美)	241.92	1512	907.2	1.9072	0.89285	1	32000	2000
1 온스 (oz)	0.00756	0.04725	0.002835	0.0002835	0.0000279	0.00003125	1	0.0625
1 파운드 (L/B)	0.12096	0.756	0.4536	1.0160	0.0004464	0.0005	16	1

가. 주요단위 해설

1) ppm: 용액중의 물질함량을 표시할 때 중량 백만분율을 표시하는 약호이다.

2) d (데니어, Denier): 450 m의 장사(長糸)로 0.05 g이 면 1 데니어임.

3) 's (번수·番數): 전사 1 파운드의 길이 즉 4,436.889 야드를 전환 인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됨.

$$(1) 4,436.889 / (\text{데니어} \times 840) = \text{면사 번수}$$

$$\therefore \text{데니어} = 5282 / \text{면사 번수}$$

(840야드는 I's 면사의 길이)

$$(2) 4,436.889 / (\text{데니어} \times 560) = \text{소모사 번수}$$

(560야드는 I's 소모사의 길이)

$$(3) 4,436.889 / (\text{데니어} \times 256) = \text{방모사 번수}$$

$$\therefore \text{데니어} = 17,331.6 / \text{방모사 번수}$$

(256야드는 I's 방모사의 길이)

소모사는 영국식으로는 560야드 1 파운드의 것을 1번수라 함.

예컨대 32번수 단사(單糸)의 경우는 1/32's, 쌍사(雙糸)의 경우는 2/32's로 됨.

4) 추(錘): 조방기(組紡機), 정방기(精紡機), 연사기(撚糸機) 등 스핀들을 사용하는 기계의 양을 나타냄.

면방 "링" 정방기는 1일 16시간 가동으로 20번수를 0.5 파운드 정도 생산하는 능력을 가짐. 소모율. 정방기로는 48번수를 0.4 파운드로 생산함.

- 5) 배수톤(排水屯): 배의 수면 밑의 체적과 동일한 체적을 가진 물의 중량 바닷물일 때는  $35f^3$  민물일 때는  $36f^3$  가 1배수량톤 균함의 크기를 표시하는데 사용된다.
- 6) D/W (Dead weight): 화물을 만재한 상태에서 선박자체의 무게를 뺀 중량 2,240 파운드를 1중량톤으로 한다.
- 7) G/T (Gross Tonnage): 배의 용적을 표시하는 단위로 선폭×길이×높이의  $f^3$  1,000 $f^3$  를 1G/T으로 한다.
- 8) 노트(Knot): 배가 1시간에 1해리(1,853 m)를 달리는 속력
- 9) S/F $\frac{1}{8}$  (Square Foot  $\frac{1}{8}$  inch): 합판의 체적을 나타내는 단위로서 1foot × 1foot ×  $\frac{1}{8}$ 인치의 체적을 말한다.

이를  $m^3$ 로 환산하면

$$0.3048m \times 0.3048m \times 0.0254m \times \frac{1}{8} = 0.00027 m^3 \text{이다.}$$

[註]	1. 1才 …… 1치×1치×12자	6. 1坪 …… 3.3 $m^2$
	2. 1石 …… 180L	7. 1坪 …… 1.5 平方呎
	3. 1斤 …… 1.3 Lbs	8. 木材 …… 3分板 1坪은 9才
	4. 1貫 …… 8.27 "	4分板 " 12才
	5. 1捆 …… 400 "	5分板 " 15才

조사표류 및 서식

6

17

지정 통계  
제 23 호

통계법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내용은  
비밀은  
절대  
장됩니다.

# 광 공 업 동 태 조 사 표 ( I - A )

197 년 월 분

사업체명 및 소재지	사업체명				전화	국	번
	대표자명						
	시	구	로·동	가			
	시	읍		번지의		호	
	도	군	면	리			
본사명 및 소재지	본사명				전화	국	번
	대표자명						
	시	구	로·동	가			
	시	읍		번지의		호	
	도	군	면	리			
일반적인 유의 사항							
(1) 반드시 흑색 또는 청색의 「인크」나 「볼펜」으로 기입하시고 사업체명, 대표자명 등은 한자로 써 주십시오.							
(2) 숫자는 반드시 1, 2, 3 ……과 같은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3) 모든 수량은 지정된 단위를 사용하여 자리를 맞추고 단위 미만 은 4사 5입하여 주십시오.							
(4) ※표가 있는 곳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제출기한		매월		15일		까지	
제출기관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 경 제 기 획 원

조사구 및 사업제번호	-	산업분류	종업원 규모	※
-------------	---	------	--------	---

1	일련 번호	품목명	품목명	규격	단위	월초재고량 (전월말재고량)		생산		금
						월초	월말	전	월	
착 마	01					※	※	※	※	※
	02									
	03									
	04									
	05									
	06									
	07									
	08									
	09									
	10									

2	일련 번호	원재료번호	원재료명	규격	단위	월초재고량 (전월말재고량)		국산		수입	국산
						월초	월말	국산	수입		
착 마	01					※	※	※	※	※	※
	02										
	03										
	04										
	05										
	06										
	07										
	08										
	09										
	10										
요 요	01		경유		kg						
	02		중유		"						
	03		방카유		"						
	04		무연탄		kg						
	05		전력		KWH						

3	구분	출	월말종업원수		월중연근무인원수		월중급여액							
			만	천	백	십	만	천	백	십	만	천	백	십
고 용 및 급 의	피고	간	생산종업원											
			사무및기타종업원											
	※	용	자영업주 및 무급종사자											
			합											

월중종업원수	일	일련번호	※
--------	---	------	---

유고사항	※	사업체명	(전화: )
------	---	------	--------

량 월	자가소비량 (재투입량)	출하량 (판매량)				과부족 보정량	월말재고량
		시	판	수	출		
단	천	백	십	일	천	백	십

입 품 수	입 품	자가생산량	사 용 량	과부족 보정량	월 말 재 고 량	
					국 산 품	수 입 품
십	천	백	십	일	천	백

적	계 품 및 원 재 료 증 감 원 인	
	고 용 및 급 여 증 감 요 인	
요	기 타 참 고 사 항	



기업요약

1. 제품

- 가. 품목번호 품목명 단위: 별책「광공업동태조사 지침」중 「지정품목 분류표」참조
- 나. 월초(말)재고량: 월초(말)에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재고물(달월초 재고량=전월말 재고량, 달월말 재고량=익월초재고량)
- 다. 생산량: 월중에 직접 생산한 제품과 타사업체에 원재료 또는 반제품을 제공하여 위탁생산한 완제품의 총량(반제품, 재공품은 제외)
- 라. 자가소비량: 일차제품을 다시 다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한량(재투입량)
- 마. 시판량: 국내판매량, 타공장(또는 광산)에의 반출량, 견본 또는 실험용 출고량, 군납(국군), 사무용 또는 급여용으로 출고한 완제품의 량등의 합계를 말하며 의상판매도 포함.
- 바. 수출량: 수출용으로 선적된 제품량, 무역회사에 판매한것, 주한 유인군에 납품한것 등의 합계를 말하며 의상수출도 포함.
- 사. 과부족 보정량: 월중에 제해, 도난, 등에 의한 결손량, 제조사에 의한 과부족 또는 반송등의 의한 증감을 말하며 증가는 +, 감소는 -로 표시함.

2. 원재료, 연료 및 동력

- 가. 원재료번호, 원재료명. 단위: 별책「광공업동태조사지침」중 「지정품목 분류표」참조.
- 나. 월초(말)재고량: 제품의 월초(말)재고량에 준하며 국산품과 수입품으로 구분
- 다. 구입량: 월중에 외부로부터 구입한 량과 동일기업의 타사업체로부터의 반입량등으로 국산품과 수입품으로 구입
- 라. 자가생산량: 직접 생산한 원재료의 량
- 마. 사용량: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한량.
- 바. 과부족 보정량: 제품의 과부족 보정량에 준하며 외부에 판매했거나 동일기업내의 타사업체로의 반출량등을 포함함.
- 사. 경유, 중유, B-C유, 무연탄의 사용량중 연료나 동력으로 사용한량은 원료 및 동력난에, 원재료로 사용한량은 원재료난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3. 고용 및 급여

- 가. 생산종업원: 생산에 직접관련이 있는 현장작업에 주로 종사하는 종업원.
- 나. 사무및 기타: 생산종업원을 제외한 모든 종업원
- 다. 자영업주및 무급종사자: 매월 일정한 보수를 받지않고 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체의 주인과 그 가족을 말하며 주당 24시간 이상 근무자를말함.
- 라. 월말종업원수: 월말현재의 종업원수
- 마. 월중연근무원원수: 일별 근무인원의 월중누계
- 바. 월중급여액: 월중에 피고용자에게 지급한 임금, 봉급, 상여금등의 총액.

조 사

1. 작성년월일	2. 응답자소속	3. 응답자성명	4. 조사원기명날인	5. 지도구역책임자확인
197 년 월 일	전화 ( )	인	인	인
삼 사				
실 사 구 분	1 차	2 차	3 차	
중분류담당자날인				
실 사 자				
천공 및 검공 자				

지정통계  
제 23 호

통계법의 규정에 따라 이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  
은 통계목적에만 사용하  
며 그 비밀은 절대 보장  
됩니다.

광 공 업 동 태 조 사 표 (II-A)

197 년 월 분

사업체명 및 소재지	사업체명					
	대표자명			전화	국	번
	시	구	로·동	가		
		시	읍		번지의	호
		도	군	면	리	
본사명 및 소재지	본사명					
	대표자명			전화	국	번
	시	구	로·동	가		
		시	읍		번지의	호
		도	군	면	리	
일반적일 유의 사항						
(1) 반드시 흑색 또는 청색의 「잉크」나 「블펜」으로 기입하시고 사업체명, 대표자명 등은 한자로 써 주십시오.						
(2) 숫자는 반드시 1, 2, 3...과 같은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3) 모든 수량은 지정된 단위를 사용하여 자리를 맞추고 단위 미 만은 4사 5입하여 주십시오.						
(4) ※가 있는 곳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제출기한			매월 15 일 까지			
제출기관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경 제 기 획 원

조사구 및 산업체 번호	산업분류	종업원규모	※
--------------	------	-------	---

1	일련 번호	품목번호	품목명	단위 ※	구분	월초재고액 (전월말 재고액)			
						상월	말	전월	말
품	01			천원	완 수탁제조및수리업액 합 계 품				
	02			"	완 수탁제조및수리업액 합 계 품				
	03			"	완 수탁제조및수리업액 합 계 품				
	04			"	완 수탁제조및수리업액 합 계 품				
	05			"	완 수탁제조및수리업액 합 계 품				
	06		합 계		"	완 수탁제조및수리업액 총 계			

2	일련 번호	원재료번호	원재료명	규격	단위 ※	월초재고량 (전월말 재고량)			
						국산품	수입품	상월	말
원 재 료	01								
	02								
	03								
	04								
	05								
연 료 및 동 력	01		경유		kg				
	02		중유		"				
	03		B-C유		"				
	04		무연탄		kg				
	05		전력		KWH				

3	추출 간척	구분	월말종업원수		월중연근무인원수		월중급여액	
			만	천백	십	일	십만	천백
고 용 및 급 과 외	※	생산종업원						
		사무및 기타종업원						
		소 계						
		자영업주및무급종사자						
		합 계						

월중조업일수	일	일련번호	※
--------	---	------	---

유고사항 ※	사업체명	(전화: )
--------	------	--------

출하액 (판매액)				과부족 보정액	월말 제품 재고액	※ 생산액					
시	관	수	출								
십억	천백	십만	천	십억	천백	십만	천	십억	천백	십만	천

구입량				자가생산량	사용량	과부족보정량	월말 재고량				
국산	품수	입	품				국산	품수	입	품	
십억	천백	십만	천	십억	천백	십만	천	십억	천백	십만	천

적	제품 및 원재료 증감 요인	
	고용 및 급여 증감 요인	
요	기타 참고 사항	

기업요령

1. 제 품

- 가. 품목번호 품목명 단위 : 별책「광공업동태조사 지침」중 「지정품목 분류표」참조
- 나. 월초(말)재고액 : 월초(말)에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제품의 재고액(장부가격 또는 생산원가 기준)
- 다. 시판액 : 국내 판매 타공장에의 반출 점본 또는 선물용 군납, 사무용 또는 급여용으로 출고된 제품을 판매가격으로 계산한 금액
- 라. 수출액 : 수출용으로 선적 무역회사에 판매, 주한유엔군에 납품한 제품의 총액
- 마. 과부족보정액 : 월중에 재해 도난등에 의하여 결손처분된 금액과 재물조사시 발견된 증감액 및 판매된 제품 중 반송등에 의해 발생한 증감액
- 바. 완제품 : 직접 생산한 제품과 원재료 또는 반제품을 타사업체에 공급하여 위탁생산한 제품의 합계액
- 사. 수탁제조및수리수입액 : 원재료 또는 반제품을 타사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제조 또는 가공하여주고 그대가로 받은 수입액(미수금포함)과 타인의 소유물을 수리하여주고 받은 수입금(미수금포함)의 합계

2. 원재료

- 가. 원재료번호, 원재료명, 단위 : 별책「광공업동태조사지침」중「지정품목 분류표」참조
- 나. 월초(말)재고량 : 제품의 월초(말)재고량에 준하며 국산품과 수입품으로 구분
- 다. 구입량 : 월중에 외부로부터 구입한량과 동일기업의 타사업체로부터의 반입량등으로 국산품과 수입품으로 구분
- 라. 자가생산량 : 직접 생산한 원재료의 량
- 마. 사용량 :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한 량
- 바. 과부족 보정량 : 제품의 과부족 보정량에 준하며 외부에 판매했거나 동일기업내외 타사업체로의 반출량등을 포함함
- 사. 경유, 증유, B-C유, 무연탄의 사용량중 연료나 동력으로 사용한 량은 원료 및 동력난에, 원재료로 사용한 량은 원재료난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3. 고용 및 급여

- 가. 생산종업원 : 생산에 직접관련이 있는 현장직업에 주로 종사하는 종업원
- 나. 사무및기타 : 생산종업원을 제외한 모든 종업원
- 다. 자영업주및무급종사자 : 매월 일정한 보수를 받지않고 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체의 주인과 그 가족을 말하며 주당 24시간이상 근무한자를 말함.
- 라. 월말 종업원수 : 월말 현재의 종업원 수
- 마. 월중연근무인원수 : 일별 근무 인원의 월중 누계
- 바. 월중 급여액 : 월중에 피고용자에게 지급한 임금, 봉급, 상여금등의 총액.

조 사

1. 작성년월일	2. 응답자소속	3. 응답자성명	4. 조사원기명날인	5. 지도구역인자확인
197 년 월 일 전화( )		인	인	인

심 사

심 사 구 분	1 차	2 차	3 차
중분류담당자날인			
심 사 자			
천공 및 검공자			

지정통계  
제 23 호

통계법의 규정에 따라  
이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 목적에만 사  
용하며 그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 광 공 업 동 태 조 사 표 (II-B)

197 년 월 분

사업체명 및 소재지	사업체명 대표자명	전화	국	번
	시 구 로 . 동 가			
	도 군 면 리		번지의	호
본사명 및 소재지	본 사 명 대표자명	전화	국	번
	시 구 로 . 동 가			
	도 군 면 리		번지의	호
<p>일반적인 유의 사항</p> <p>(1) 반드시 흑색 또는 청색의 「인크」나 「블펜」으로 기입하시고 사업체명, 대표자명 등은 한자로 써 주십시오.</p> <p>(2) 숫자는 반드시 1, 2, 3 ..... 과 같은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 여 주십시오.</p> <p>(3) 모든 수량은 지정된 단위를 사용하여 자리를 맞추고 단위 미 만은 4 사 5입하여 주십시오.</p> <p>(4) ※표가 있는 곳은 기입하지 마십시오.</p>				
제출기한	매월	15일	까지	
제출기관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 경 제 기 획 원

조사구 및 사업제 번호	—	산업분류	*	종업원규모	유고
--------------	---	------	---	-------	----

1	일련번호	품목번호	품목명	단위	원재료품 재고액 (전월말재고품재고액)		출하액	
					실액	천백만원	실액	천백만원
품	01	3522002	신경계용약	천원				
	02	3522003	해열진통제	"				
	03	3522004	소화기계용약	"				
	04	3522005	비타민제	"				
	05	3522006	홀몬제	"				
	06	3522007	자양강장제	"				
	07	3522008	혈액및체액용약	"				
	08	3522009	항생물질제	"				
	09	3522010	외피용약	"				
	10	3522011	기타의약품	"				
	11	3522011	계	"				

2	일련번호	원재료번호	원재료명	규격	단위	원재료고량 (전월말재고량)	
						국산품	수입품
원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원료 및 에너지	01		경유		kg		
	02		중유		"		
	03		방카유		"		
	04		무연탄		%		
	05		전력		KWH		

3	구분	월말종업원수		월중평균인원수		월중급여액	
		만	천백만원	만	천백만원	만	천백만원
고용 및 급여	간접						
	직접						
	합계						
* 기타	상무및기타종업원						
	자영업주및무급종사자						

월중 조업일수

일련번호 \*

사항 ※	사업제명	(전화: )
------	------	--------

(판 매 액)												과부족 보정액	월말 제품 재고액	※생 산 액												
수						출																				
단	천	원	십	억	천	만	단	천	원	십	억	단	천	원	십	억	단	천	원	십	억	단	천	원	십	억

구 입 량				가 가 생산량	사 용 량	과부족보정량	월 말 재 고 량																	
국 산 품	수 입 품						국 산 품	수 입 품																
삼	단	천	백	십	억	삼	단	천	백	십	억	삼	단	천	백	십	억	삼	단	천	백	십	억	

비 요	출 하 액 및 원 재료 증 감 요 인	
	고 용 및 급여 증 감 요 인	
	기타 참고 사항	



기업요령

1. 제품

- 가. 월초(말) 재고액: 월초(말)에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제품 외 재고액(장부가액 또는 생산원가 기준)
- 나. 시판액: 국내 판매, 타공장에의 반출, 전본 또는 전출용, 군납, 사무용 또는 급여용으로 출고된 제품을 판매가격으로 계산한 금액
- 다. 수출액: 수출용으로 선적, 무역회사에 판매, 주한 유엔군에 납품한 제품의 총액
- 라. 과부족보정액: 월중에 재해 도난등에 의하여 결손처분된 금액과 재물조사시 발견된 증감액 및 판매된 제품중 반송등에 의해 발생한 증감액
- 마. 완제품: 직접 생산한 제품과 원재료 또는 반제품을 타사업체에 공급하며 위탁생산한 제품의 합계액
- 바. 수탁제조 및 수리수입액: 원재료 또는 반제품을 타사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제조 또는 가공하여주고 그 대가로 받은 수입액(미수금포함)과 타인의 소유물을 수리하여주고 받은 수입금(미수금포함)의 합계

2. 원재료

- 가. 원재료번호, 원재료명, 단위: 별책「광공업 동태조사 지침」중 「지정품목 분류표」참조
- 나. 월초(말) 재고량: 제품의 월초(말) 재고량에 준하여 국산품과 수입품으로 구분
- 다. 구입량: 월중에 외부로부터 구입한량과 동일기업의 타사업체로부터의 반입량등으로 국산품과 수입품으로 구분
- 라. 자가 생산량: 직접 생산한 원재료의 량
- 마. 사용량: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한량
- 바. 과부족 보정량: 제품의 과부족 보정량에 준하여 외부에 판매했거나 동일기업내외 타사업체로의 반출량등을 포함함
- 사. 경유, 중유, B-C유, 무연탄의 사용량중 연료나 동력으로 사용한량은 원료 및 동력난에 원료로 사용한량은 원재료난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3. 고용 및 급여

- 가. 생산종업원: 생산에 직접 관련이 있는 현장작업에 주로 종사하는 종업원
- 나. 사무 및 기타: 생산종업원을 제외한 모든 종업원
- 다. 자영업주 및 무급종사자: 매월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않고 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체의 주인과 그 가족을 말하며 주당 24시간 이상 근무한자를 말함
- 라. 월말종업원수: 월말 현재의 종업원수
- 마. 월중연근무인원수: 일별 근무인원의 월중누계
- 바. 월중급여액: 월중에 피고용자에게 지급한 임금, 봉급, 상여금등의 총액

조 사				
1. 작성년월일	2. 응답자소속	3. 응답자성명	4. 조사원기명날인	5. 지도구책임자확인
197년월일	전화( )	인	인	인

심 사				
심사구분	1 차	2 차	3 차	
중분류담당자날인				
심사자				
천공 및 검공자				

광공업 생산자 판매가격조사표 (표)

197 년 월 분

조사구 및 사업체번호	산업분류	유고사항
		※

1. 통계법의 규정에 따라 이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목적에만 사용되며 그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2. 이 조사표는 늦어도 매월 15일 까지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에 별착토록하여 주십시오.

구분	명칭	소재지	대표자명	전화번호
사업체				
본사				

품목번호	품목명	품질 및 규격	단위	전월평균판매가격					금월평균판매가격				
				만원	천원	백원	십원	원	만원	천원	백원	십원	원

참고: 전월과 비교하여 가격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요인을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작성	년	월	일
	197	년	월 일
응답자 성명			
과 인			

- 기입요령
1. 각 품목별로 지정된 품질 및 규격에 대하여 지정된 단위당 가격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품질 및 규격 그리고 단위가 지정된 것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지정된 것으로 환산하여 기입하되 환산이 곤란할 때는 귀사업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상세히 기입하여 주십시오.
  2. 평균 판매가격은 용가, 포장비, 물품세, 주세 및 유통세를 포함한 공장인도 (광산은 최 근역도) 가격으로서 월중 평균 판매가격 즉 지정품목 규격에 대한 그 월중의 일별 판매가격의 월평균 가격으로 나타내기를 말합니다.
  3. 수출품목일 때에는 F.O.B 가격으로 하되 원,전을 지우고 00을 00으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4. 기타 상세한것은 조사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 전기업동태통계조사표(I-B)

(19 년 월 분)

경 제 기 획 원

1.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목적에만 사용하고 파세나 수사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2. 이 조사표는 늦어도 매월 20일까지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 필착토록 하여 주십시오.
3. 이면의 기입요령을 참조하십시오.

조 사 구	산 업 분 류
-	4 1 1 0

사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소 개 지	전 화 ( - )

### 발 전 량

도 별	총발전량 (KWH)	자가소비전량 (KWH)	순발전량 (KWH)
서울특별시			
부산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합 계			

### 종합손실전력량

종합손실전력량	(KWH)
---------	-------

(주) 1차, 2차송전손실 및 배전손실량의 합계

### 수용전력량

분 류	수용전력량(KWH)
가 정 용	
산 업	
광	
업	
계	
기 타 산 업	
용 소	
계	
기 타	
합 계	

고용및급여	1. 생산종업원 : 생산에 직접 관련이 있는 현상 작업에 주로 종사하는 종업원		
	2. 사무및기타 : 생산종업원을 제외한 모든 종업원		
고용및급여	3. 월말종업원수 : 월말 현재 피고용인수		
	4. 월중연근무인원수 : 일별근무인원의 월중누계		
고용및급여	5. 급여액 : 월중에 피고용자에게 근무했거나 지급한 임금, 상여금 등의 총액		
	월말종업원수	월중연근무인원수	월급여액(천원)
피고용자	생산종업원		
피고용자	사무기타종업원		
피고용자	소 계		
자연업주및무급가족종사자			
합 계			

주요 : 수치의 증감이 심할 때에는 그 요인을 밝혀 주십시오

작성년월일	응답자성명및날인
19 년 월 일	

# 기 입 요 령

## I. 일반사항

1. 청색 또는 흑색잉크로 명료하게 기입하여 주십시오.
2.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3. 각수량의 단위미만과 금액의 천원미만은 4사 5입하여 주십시오.
4. 기타 상세한 것은 조사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 II. 주요항목의 정의

### 발전량

1. 총발전량 : 해당 시 도에 위치한 각종발전소의 월중 발전량(수전분포함)
2. 자가소비전력량 : 발전소가 월중에 발전을 위하여 소비한 전력량(발전소내 자가소비 전력량)
3. 순발전량 : 총발전량 - 자가소비전력량

### 종합손실전력량

1. 종합손실전력량 : 송전과 배전과정에서 생긴 월중의 손실전력량

### 수용전력량

1. 가정용 : 일반가정에 공급한 전력량
2. 산업용 : 각산업에 대하여 공급한 전력량으로서 농림수산업, 광업, 제조업과 기타 산업(상업, 서비스, 전철 등)으로 분류합니다
3. 기타 : 가정용, 산업용을 제외한 공급전력량(관, 군, UN군, 사업자용등)

광 공 업 동 태 조 사

신 규 사 업 체 색 출 보 고 서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귀하

광공업 동태조사 신규대상 후보사업체를 다음과 같이 색출보고 합니다.

보고일 197 년 월 일

보고자 조사구번호( )

성명 ④

선 정	※
기 준	

I. 사업체 내용

사업체명칭		대표자명	
소재지		전화	
본사명칭		대표자명	
소재지		전화	

가) 생산품명 1. 2. 3. 업종 (O.X) { 광업 ( )  
 나) 가동개시 197 년 월 일 { 제조업 ( )  
 다) 종업원수 계 인  
 상용 인 임시 인

라) 월간출하액

II. 채택심사

채택여부 물량조사( ) 금액조사( )  
 (O.X)

사유(부적격)

산업분류( ) 조사구 및 사업체번호( - )

실사개시기준일 197 년 월초부터

III. 실사지시

일자 197 년 월 일 통생 354.24- 호 추가지시계 호

색출보고자( ) 실사담당조사원( )

주: 1. 색출보고자는 점선(.....) 이상의 사업체 내용만 정확히 기입한다.  
 2. 이면참조

## <참 고>

### 1. 이 보고서의 대상사업체는

1) 광공업통계조사(센서스포함)에서 누락되었거나 그 후 신설된  
종업원 5인이상의 사업체로서

가) 조사대상 지정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사업체

나) 「토사석채굴업」, 「직물제품 및 의복·장신품제조업」, 「의약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2) 광공업통계조사(센서스포함)에서 이미 조사된 사업체중 전업  
하여 새로 조사대상 지정품목을 생산하거나 지정된 조사대상산  
업(“토사석채굴업” “직물제품 및 의복 장신품제조업” “의약품  
제조업”)에 속하는 사업체

### 2. 색출요령

현지조사에서 색출하거나 또는 시·군행정기관에 비치된 제자료  
에 의하여 색출하여 소정의 “신규사업체 색출보고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경 제 기 획 원

통 생 354.24- (75-7921) 197 . . . . .

신 조사구번호( ) 성 명

제 목 광공업동태조사 신규사업체 예비실사지시

다음 사업체를 심방하여 소정의 예비실사사항을 3일이내에 조사 보고할 것

- |           |         |
|-----------|---------|
| 1. 사업체명칭  | 3. 대표자명 |
| 2. 사업체소재지 | 4. 전화번호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장

.....<끝 지 마 시 오>.....

광 공 업 동 태 조 사

신 규 사 업 체 예 비 실 사 보 고 서

수 신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보고일 197 년 월 일

보고자 조사구번호( ) 성 명

197 년 월 일자 통생 354.24 -호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비실사 지시사항을 조사 보고합니다.

- |            |                          |
|------------|--------------------------|
| 1. 사업체명    | 대표자명                     |
| 소재지        | 전화번호                     |
| 2. 본사명칭    | 대표자명                     |
| 소재지        | 전화번호                     |
| 3. 가동개시년월일 | 197   년   월   일          |
| 4. 종업원수    | 계           인            |
|            | 상 용           인   임시   인 |
| 5. 월간출하액   |                          |
| 6. 생산품목명   |                          |
| 7. 심 방 일   | 197   년   월   일          |
| 응답자        | 직책   성명                  |
| 8. 비 고     |                          |

광공업동태조사

유 고 사 업 제 보 고 서 (I-1)

생산물계과장 귀하

197 년

197 년

월 20일부터

월 19일까지

지도원 조사원

㉠ ㉡

조사구 및사업 계번호	사 업 명 칭	소 속 처	제 재 지	대 표 자	전화 번호	유 고 내 용			일 자	이 유	기 타 참고사항
						유 출	휴 업	폐 업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광공업 동태 조사

유 고 사 업 체 보 고 서 (I-2)

생산품계 파장        회화        197        년        월 20일부터        지도원        197        년        월 19일까지 조사원        ㉡ ㉢

조사구 및사업호 체번호	사 업 체 명 소	지 계	지 대 표 자	전화 번호	유 고 내 용		일 자	이 전 경 정 명	이 전 경 정 관 청	전업의내용		비고
					이 전 전 업	경 정 변 경				기 정 물 품	전 업 물 품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경 제 기 획 원

- 통 생 354.47 (75-7921) 197 . . . . .
- 수 신 조사구번호( ) 성명
- 계 목 광공업동태조사 이전사업체 실사지시
- 광공업동태조사 추가대상사업체에 대한 실사를 지시하니 다음 사항에 의하여 소정의 실사를 계속 실시할 것.
1. 본건 사업체의 내용과 조사종류, 실사개시 기준일은 이면 표와 같다.
  2. 본건 사업체에 대한 조사는 지정된 실사개시 기준일 이후 계속 하여야 한다.
  3. 사업체명부에 본건 사업체의 명칭, 번호, 산업분류, 조사종류, 지정품목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4. 본건 사업체에 대한 실사조사표 작성에 있어서는 조사요령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적요란에 기입하여야 할 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사업체를 즉시 심방하여 실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끝.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장

진조사구 및사업 채번호	원조사구 번호	사업구 번호	사업채 번호	사업분류	사업명	대표지	소재지	지	전화번호	조사종류			실사개시 일
										수량	금액	가격	

## 경 제 기 획 원

통 생 354.47 (75-7921) 197 . . .

수 신 조사구번호( ) 성명

계 목 광공업동태조사 신규추가사업체 실사지시

광공업동태조사 추가대상사업체에 대한 실사를 지시하니 다음 사항에 의하여 소정의 실사를 계속 실시할 것.

1. 본건 사업체의 내용과 [조사종류, 실사개시 기준월은 이면 표와 같다.
2. 본건 사업체에 대한 조사는 지정된 실사개시 [기준월 이후 계속 하여야 한다.
3. 사업체명부에 본건 사업체의 명칭, 번호, 산업분류, 조사종류, 지정품목명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4. 본건 사업체에 대한 실사 조사표 작성에 있어서는 조사요령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적요란에 기입하여야 할 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
5. 해당사업체를 즉시 심방하여 동봉하는 조사협조의뢰공한을 전달하고 실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첨 부 : 사업체앞 조사협조 의뢰공한 1부. 끝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장

조사구 번호	사업제 번호	산업분류	사업채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조사방법	조사종류		정 품 명	실사개시 시기
								금액	가격		